2023년 개정판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가이드북 활용 시 유의 사항]

★ 각 시도교육청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및 교육감의 권한 내에서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본 가이드는 해당 절차를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표준적 예시임을 밝힙니다.

- 본 가이드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되었음
- 학교는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 피해자 보호, 공정하고 신속한 사안 처리, 재발 방지 등에 노력하여야 함
-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등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본 가이드북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침을 반영하여 구성하였음
- 본문에서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의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 지침을 확인 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함
- 업무 처리와 관련해 가이드에 예시로 기재된 관련 조직 또는 업무 담당자는 시도교육청 및 단위 학교별 업무 분장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법정 절차 이외 사항은 시도교육청별 세부 지침 등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음

Ⅰ 학교 성희롱·성폭력의 이해

1.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9
2.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12
3.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18
4. 판례로 보는 성희롱·성폭력 21

Ⅱ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발생 통보

1. 성희롱·성폭력 사안 신고 및 발생 통보 29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30

Ⅲ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학교의 역할

1. 법령상 학교의 역할 35
2.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세부 추진내용 38

CONTENTS 목차

Ⅳ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의 개관

1.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흐름도 49
2. 성희롱·성폭력 사안별 위원회 50
3. 피·가해 대상별 위원회 운영 51
4. 피·가해 대상별 사실확인 53
5.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시 주체별 역할 55

Ⅴ 피·가해 대상별 사안 처리 절차

1.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61
2. 교직원이 피해자인 경우 78

Ⅵ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1.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이해 101
2.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의 대화 및 지원 103
3.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의 이해 106
4. 피해 지원 및 관련 기관 활용의 실제 113

Ⅶ 부록

001 상담일지 123
002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서 124
003 민감정보처리 동의서(신고인) 125
004 전문기관 연계 의뢰서 126
005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127
006 출석 통지서 128
007 서면 진술서 129
008 비밀유지 서약서(조사자) 130
009 사실확인 문답서(피신고인) 131
010 사실확인 결과 보고서 132
011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촉(임명)장 133
012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134
013 성고충심의위원회위원 위촉 동의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 135
014 성고충심의위원 기피 신청서 136
015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137
016 성고충심의위원회 시나리오 139
017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서 147
018 심의결과 통보서 148
019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보고 149

CONTENTS 표 목차

[표 1-1] 성희롱과 성폭력의 법령상 비교 9
[표 2-1]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사안 신고 및 발생 통보 29
[표 3-1] 성고충상담원 지정(예시) 40
[표 3-2]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예시) 42
[표 4-1]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별 위원회 50
[표 4-2] 성희롱·성폭력 피·가해 대상별 주관 위원회 51
[표 4-3] 성희롱·성폭력 피·가해 대상별 사실확인 주체 53
[표 5-1] 학생[피해]-학생[가해] 사안 주관 위원회 61
[표 5-2] 학생[피해]-교직원[가해] 사안 주관 위원회 68
[표 5-3] 대상별 사실확인 주체 및 내용 72
[표 5-4] 교원[피해]-학생[가해] 사안 주관 위원회 78
[표 5-5] 피해교원 및 가해(침해)학생 조치 81
[표 5-6] 교직원[피해]-교직원[가해] 사안 주관 위원회 84
[표 5-7] 성고충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안) 90
[표 5-8]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치 91
[표 5-9] 직원[피해]-학생[가해] 사안 주관 위원회 94

I 학교 성희롱·성폭력의 이해

1.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정의
2.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3.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4. 판례로 보는 성희롱·성폭력

1.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가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법적 근거

- **'성희롱'이란** 타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함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신체적·심리적·언어적·사회적)행위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표 1-1] 성희롱과 성폭력의 법령상 비교

성폭력	구분	성희롱
• 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 양성평등기본법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서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법적 정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형사처벌	**법 적용**	형사처벌, 기관 내 징계, 손해배상

- 성폭력을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성희롱이 성폭력에 포함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을 구분하여 관련 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 성희롱은 업무 또는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함
- 성희롱은 사안에 따라 기관 내 징계에 그치지 않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동시 적용받을 수도 있음. 형사처벌 되지 않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 내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할 수 있음

참고

[판례로 보는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나 성희롱·성폭력 개념의 적용 시 유의 사항

- **학생 관련 사안**
  - 학생이 관련된 성희롱·성폭력은 관계법상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것 이외에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조치 및 선도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교직원 관련 사안**
  - 교직원이 관련된 성희롱·성폭력은 관계법상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것 이외에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의 법령에 근거하여 피해교직원 보호, 가해자 징계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성폭력과 학교폭력**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학교폭력의 개념에 성폭력을 포함하고 있음

- **성폭력과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 누구든지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고, 동시에 「아동복지법」(행위자가 보호자일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으로도 처벌될 수 있음

2.
성희롱·성폭력의 유형[1)]

가 행위유형별 분류

[성희롱]

정의	업무 또는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신체적 성희롱으로 구분됨

성희롱의 유형	행위의 예시
육체적 성희롱	- 허리에 손 두르기와 함께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 - 허리를 잡고 다리를 만지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는 행위 -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	-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 자신의 성생활을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의 성생활에 대해 질문하는 행위 - "어제 또 야동 봤지?" -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 "운동하고 왔어? 어깨 한번 만져보고 싶다."
시각적 성희롱	-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 스크린세이버로 깔아놓는 행위 - 야한 사진이나 농담 시리즈를 카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행위 -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하는 행위 -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행위 등
기타 성희롱	-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

1) 참고 1. 학교 내 성희롱 · 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2020.9. 교육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참고 2. 디지털 성범죄 피해 청소년 개입 매뉴얼(2020.9.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참고 3. 학생을 위한 성폭력 신고 가이드 (2021.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희롱의 유형	행위의 예시
	-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니 불이익을 주는 행위

출처: 여성가족부(2021.7)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일부 발췌

[성폭력]

• 강간

정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성기삽입)하는 행위
행위의 예시	- 힘으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맺는 행위 - 거절하기 어려운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

• 유사 강간

정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상대방에 대하여 성기를 제외한 다른 신체 부위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성기가 아닌 다른 것을 넣는 행위
행위의 예시	- 강제로 구강성교, 항문성교 하는 행위 - 강제로 성기에 손가락이나 물건을 넣는 행위

• 강제추행

정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또는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행위의 예시	- 기습적으로 키스 등 스킨십을 하는 행위 - 기습적으로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얼굴, 머리, 팔뚝, 등을 쓰다듬는 행위 - 엘리베이터에서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참고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형법 제305조)의 적용]

①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 13세 미만이면 해당 미성년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간음, 추행이 성립함.

②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 해당 미성년자의 동의하에 한 경우, 성인이 해당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동의를 받고 한 경우 모두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이 성립함.

• 준강간·준강제추행

정의	폭행 또는 협박 없이 상대방의 심신상실(장애, 수면, 술에 취함, 의식 잃음) 또는 항거불능(심리적,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
행위의 예시	- 잠이 든 사람을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행위 - 술에 취해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을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행위 -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패싱아웃'(음주 후에 기억을 잃는 '알코올 블랙아웃'에서 더 나아가 의식이 상실돼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인 사람을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행위

• 성학대

정의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행위의 예시	- 아동·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애무에 의한 성행위 등) - 아동·청소년에게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 추행, 성기 추행, 항문 추행, 기타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관찰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디지털 성범죄

정의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메시지, 야한 사진, 동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야기하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행위의 예시	-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 야한 사진, 야한 동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주는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 상대방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사진 및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 등을 합성 및 유포하는 행위 - SNS 및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 행위 등

참고

[디지털 성범죄]

- 2020년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된 바 있는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기반의 상황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 스토킹, 주거 혹은 공공장소 침입, 강간, 준강간, 집단 강간 등의 현실(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또한 '조건만남'과 같은 청소년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불법 광고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그루밍(Grooming)

정의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가해자가 일정 기간 피해자를 길들인 뒤 행하는 성폭력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적 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피해자가 성폭력·성범죄를 제3자에게 폭로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온라인 그루밍) 성인이 성적착취 목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행위의 예시	- 상대방에게 친밀하게 대하면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길들이는 행위 -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노출행위,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 그루밍의 여섯 단계 (출처: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1. 피해자 고르기: 가출, 방임 등 피해자의 취약점을 파악함 2. 피해자의 신뢰 얻기: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보를 수집하며 신뢰를 얻음 3. 욕구 충족시켜주기: 선물을 주거나 놀이공원에 데려가는 등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함 4. 고립시키기: 개인교습, 짧은 여행 등 아이가 보호자와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 의존성을 키움 5.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하는 등 성적인 관계를 만들기 시작함 6. 통제 유지하기: '아무도 네 말을 믿지 않는다.', '주변에 알리겠다.' 등 협박·회유로 성적인 관계를 이어감

참고

[온라인 그루밍]

- 온라인에서 성인이 아동·청소년과 성적 목적의 대화를 하는 것,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채팅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를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

• 기타 유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는 것을 의미함. (「형법」 제303조 제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함.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성폭력처벌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을 의미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것도 처벌됨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 등')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 등')하거나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것도 처벌됨

출처: 여성가족부(202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중 일부 발췌

나 대상자별 분류

[친족 성폭력]

정의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및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특징	-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일상적으로 대면하게 되어있어 피해가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임. 특히 친족 성폭력의 가해자는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 또는 연령이나 가족 내 지위가 주는 권위 등을 이용함 - 친족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10대~20대이며, 아버지(친부와 의부)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음. 대부분 유아 또는 아동기 때 시작되어 청소년기 및 성인기까지 지속됨 - 지속적 피해를 경험하며, 피해자들이 피해로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가해자들이 폭력, 협박 및 신뢰와 친밀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느끼는 무력감이 큼 - 가족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가족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어려움. 다른 가족이 알게 되거나 피해가 드러났을 때 피해자가 비난을 받거나 피해를 묵과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함

[데이트 (성)폭력]

정의	- 데이트(성)폭력은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의미함 - 데이트(성)폭력의 예시: 폭언과 욕설, 뺨을 때리거나 손찌검을 하는 행위,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구타하는 행위, 성관계 사실과 데이트 비용을 빌미로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행위, 데이트 상대를 위협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등
특징	-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도 함 - 데이트폭력은 '사랑싸움' 등으로 축소되기도 하며 관계의 특성상 피해자는 개인정보와 취약점 등이 가해자와 공유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공포와 불안을 호소함

3.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가 2차 피해의 개념 및 법적 근거

-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밝히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가해자에 대한 옹호 등의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2017두74702 판결)

- 2019. 12. 25.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2차 피해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2차 피해의 개념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남성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도 성립됨
-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용자에 의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및 인사 조치를 금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피해자의 신원에 대한 누설이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2차 피해를 규율함[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 · 재판 · 보호 · 진료 · 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 신체적 · 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 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 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 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참고

[판례로 보는 2차 피해]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밝히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2) 참고.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및 해설 (2021 여성가족부)

나 2차 가해(피해)의 양상

2차 가해(피해)의 유형	행위의 예시
사용자·관리자·상담자에 의한 2차 피해 양상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등
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 양상	-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여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등
행위자에 의한 2차 피해 양상	- 사건 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 조직 구성원들에게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관리자에게 사건을 피해자보다 먼저 보고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 조직 내 지지자 그룹을 형성하는 행위 - 조직 내 구성원들을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 -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등

출처: 여성가족부(2023)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참고

[2차 피해를 주는 표현 (예시)]

"그때 싫다고 왜 말을 못 하고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길 왜 따라갔어? 네가 여지를 준 것 아니야?"
"가해자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겨우 그 정도의 일을 가지고 문제 삼아?"
"합의 안 해주면 가만 안 둘 거야."
"네가 평소에 교복을 짧게 줄여 입었잖아"
"사실은 너도 즐긴 거 아니야?"
"저 정도 사과했는데 좀 받아 주지 그래? 가해자도 사람인데 불쌍해."
"분명 돈 때문에 피해자인 척 연기하는 거야."
"피해자인데 왜 웃고 다녀? 넌 피해자답지 못해."

4. 판례로 보는 성희롱·성폭력

가 성희롱 관련 판례

•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피고인은 중학교 OO교사이다. 피고인은 복도에서 피해자 A(15세)로부터 초코바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고맙다. 역시 너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고인은 수업 시간에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던 중 칠판에 좌표를 그리면서 포물선을 여성 가슴 모양으로 그린 후 "아이참,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수업 시간에 늦은 피해자 B(15세)와 함께 수업하기 위해 교실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이리 더 이뻐졌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에 대고 깍지를 끼었다. 피고인은 수업 진행 중 방학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 학생들과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 C(14세)가 방학 중 피해자 D(14세) 등과 함께 워터파크에 갔다는 말을 하자 "너희들 비키니 입었어?"라고 말하여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1315)

•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

원고는 **학교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F는 해당 학교에서 OO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임. 원고는 학교 음악실에서 F에게 2차례에 걸쳐 "선생님, 섹시한 거 보여드릴까요?"라는 발언을 하였고, F는 원고의 위 발언을 제지한 다음 수업을 진행함. 당시 원고는 앞을 여미는 지퍼가 있는 후드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내의나 별도의 상의를 입고 있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발언 이후 F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위 점퍼의 지퍼를 가슴 중간까지 내리는 행동을 함. F는 수업을 중단하고 원고를 복도로 불러내어 위 발언과 옷차림을 지적함. 원고는 허리에 손을 올린 채 F의 지도를 받다가 교실 뒷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F가 재차 원고를 교실 밖으로 나오게 하였고 F가 교실 앞문으로 들어간 사이에 원고는 팔짱을 낀 채로 뒷문 벽에 몸을 기대어 F의 추가 지도를 기다림. F는 해당 사안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에 대한 성희롱 발언 및 교사의 지도 중 불량한 태도를 보였음을 이유로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출석정지(10일) 조치 및 원고와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20시간) 이수 등의 조치를 결정함. 원고는 해당 조치에 대한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해당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0182 출석정지10일 등 조치 무효확인의 소)

나 성폭력 관련 판례

• **〈강간〉**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14세), 친구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고 E에게 "옆방에 가 있어."라고 말하여 안방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무도 없으니 그걸 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히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하기 싫다, 하지 마라."라고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다음,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 **처벌: 소년법에 따라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 **〈강간〉** 가출한 청소년이 지낼 곳이 없어서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강간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당시 15세)와 채팅을 하는 중 피해자가 가정불화로 가출하여 정해진 숙소가 없이 모텔이나 노래방을 전전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채팅 어플을 통하여 "나는 00지역에 살고 있는데, 널 만나기 위해 네가 있는 지역인 ##로 내려갈 테니 꼭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함.

피고인은 ##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방을 구해주겠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늦었으니 오늘은 근처의 모텔에서 잠을 자고, 내일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G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가 싫은 기색을 보였음에도 피해자가 당장 지낼 곳이 없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나랑 성관계를 하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함.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 11. 5 선고 2020고합80 판결)

• **처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

• **〈준강제추행〉** 담임교사였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

피고인은 C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D(여, 18)는 1년 전 피고인이 담임이었던 반의 학생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학 중일 때부터 '미래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와 여러 개의 약속을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였음. 그 약속 중의 하나로 피해자가 졸업한 후에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어느 한 사람이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무박 드링크'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와 1:1 E 채팅창에 공지사항으로 띄우기도 함.

피고인은 D가 졸업 후 대학 진학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학교를 찾아오자, '무박 드링크'를 하기로 약속하자고 재차 말함. 이후 피해자와 약속을 잡고 연극관람을 한 후, 고깃집을 시작으로 세 차례 식당을 옮기며 술을 마심.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호불상의 DVD방에 데려갔다가 피해자가 만취한 모습을 보이자,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짐.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 (부산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고합519 판결)

• **처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 **〈강제추행〉**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등 부위,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

피고인은 F중학교 교사임. 피고인은 F중학교 복도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4세)의 머리와 등 부위 중 브래지어 끈이 가로지르는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교실에서 사물함 부근에 서 있는데 뒤에서 등을 치고 쓰다듬는 행위(E), 점심 식사 후 교실에 와서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밥 먹었니?' 하면서 어깨동무하듯 어깨 부분을 툭툭 치면서 건드린 행위(F), 복도를 지나가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어디 가냐?'고 묻는 행위(G),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점심밥 잘 먹었어'라고 물어본 행위(H), 복도를 지나가는데 '밥 많이 먹었어?'라면서 손바닥으로 어깨에서 등까지 쓰다듬은 행위(I), 아침 조회가 끝나고 화장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으며 '열심히 하네'라고 말한 행위(J), 과학 시간에 학습지를 풀게 한 후 교실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는 행위(K) 등 총 4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13명을 추행함. (수원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80 판결)

• **처벌: 벌금 3,0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

• **〈강제추행〉** 한의사가 치료하면서 추행

피고인은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위 한의원에 손님으로 갔음. 피고인은 D한의원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기가 약해진 이유가 뭐냐, 학교 다니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너를 위로해 주겠다. 일어나 보라.”는 등의 말을 하고, “나를 안아봐라, 아래 부위에 밀착시켜 봐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몸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당황하여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피해자에게 “뽀뽀도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함.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 (수원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9고합10 판결)

• **처벌: 징역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피고인에 대한 정보 3년간 공개 및 고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

• **〈미성년자 위력 추행〉** 예체능 교수였던 자가 수업 지도를 빙자하여 추행

피고인은 B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근무하였고, 국악과 제자였던 C(가명)의 부탁으로 C의 딸인 피해자 D(여, 17세)에 대한 대학입시 지도를 맡게 됨.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복식호흡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배로 숨을 쉬어야 하는데 가슴, 어깨가 움직인다. 안아봐라.”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의 배와 피해자의 배가 닿도록 피해자를 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숨 쉬는 것을 느껴봐라.”라고 말함.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진 후 "느껴봐라.”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도록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거는 수업 공부이고 절대 성추행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끌어안음. 피고인은 국악 교육을 빙자하여 1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함.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고합538 판결)

• **처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피고인에 대한 정보 3년간 공개 및 고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운영과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

• **〈미성년자 위력 추행〉** 학원 원장이 원생인 피해자에게 어깨 안마를 해주겠다면서 추행

피고인은 'D'라는 학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E(16세, 여)는 학원의 학원생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평소 잘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학원에서, 수업 도중 피해자에게 피곤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주자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며 책상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상의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누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별지 위력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 (춘천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7고합57 판결)

• **처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 **〈장애 아동 · 청소년 간음〉** 계부 피고인이 지적장애 있는 피해자를 여러 회 간음

피고인은 피해자(여, 당시 15세 내지 16세)의 계부임.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보육 기관에 살다가 친모,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부모와 같이 살게 되면서 다시 보육 기관으로 되돌려 보내질 것을 염려하여 부모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뒤 7회에 걸쳐 장애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 (수원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고합76 판결)

• **처벌: 징역 7년,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아동 · 청소년 성 착취물이 포함된 링크를 전송받아 컴퓨터에 저장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 F가 운영 중인 트**, 텔**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일대일 대화를 통하여 F로부터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영상 캡처 사진을 받아봄. 피고인은 F가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 F로부터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2,759개가 포함된 K 링크를 전송받아 이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함.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 7. 7 선고 2020고단2805 판결)

• **처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540 판결)

• **처벌: 징역 1년,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

Ⅱ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발생 통보

1. 성희롱·성폭력 사안 신고 및 발생 통보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1.
성희롱·성폭력 사안 신고 및 발생 통보

[표 2-1]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사안 신고 및 발생 통보

대상별	신고 접수 및 보고		발생 통보 (여성가족부에 발생 통보)
학생(피해)-학생(가해)	1) 인지 및 상담	2) 신고 접수 3) 교육(지원)청 보고(학교폭력) **4) 수사기관 신고(성범죄)**	**(성폭력 발생 통보)** 단, 피해자 명시적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제외
학생(피해)-교직원(가해)	1) 인지 및 상담	2) 신고 접수 3) 교육(지원)청 보고(학교폭력) **4) 수사기관 신고(성범죄)**	**(성희롱 · 성폭력 발생 통보)** 단, 피해자 명시적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제외
교원(피해)-학생(가해)	1) 인지 및 상담	2) 신고 접수 3) 교육(지원)청 보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성희롱 · 성폭력 발생 통보)** 단, 피해자 명시적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제외
교직원(피해)-교직원(가해)	1) 인지 및 상담	2) 신고 접수 **3) 수사기관 신고**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 피해자 명시적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제외	**(성희롱 · 성폭력 발생 통보)** 단, 피해자 명시적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제외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가 성범죄 신고 의무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상 교육현장(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관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 아동·청소년: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기관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 파견 근로자, 방과후강사, 봉사자 모두 포함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함)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 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성폭력방지법」 제9조 제1항

-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자(학교장과 그 종사자)는 성범죄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피해자 고소권 행사 여부와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는 전혀 별개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함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고를 먼저 했더라도,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음. 다만, 수사가 개시될 정도의 정보가 알려져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됨

-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참고

[수사기관 신고 시 유의 사항]

- 부모가 신고에 소극적인 경우, 신고 의무자인 학교(교장, 교사)의 역할과 부모의 법적 책임을 고지해야 함
- 신고하기 전 피해자에게도 신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급적 설명해 주어야 함
-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마음은 무엇인지, 신고하면 어떻게 될 거로 생각하는지 등 잘 들어주고 신고 후 과정 안내, 피해 지원, 신고 의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신고하여야 함
- 신고를 접수한 해당 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학교와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함

나 신고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 「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 「성폭력방지법」 제38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기관장 및 종사자 간 보고는 이루어졌으나 누구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다 신고자 보호제도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 · 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이런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함

「성폭력처벌법」 제23조

-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청소년성보호법」 제65조 제4항 제1호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종류]

○ 관련 법령 :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

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법 제7조)
- ◆ 예비, 음모(법 제7조의2)
-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법 제8조)
- ◆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법 제8조의2)
- ◆ 강간 등 상해·치상(법 제9조)
- ◆ 강간 등 살인·치사(법 제10조)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법 제11조)
-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법 제12조)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법 제13조)
-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 행위 등(법 제14조)
- ◆ 알선영업행위 등(법 제15조)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④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

출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여성가족부, 2022)

Ⅲ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학교의 역할

1. 법령 상 학교의 역할
2.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세부 추진 내용

1.
법령상 학교의 역할

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수립

라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마 성희롱·성폭력 고충담당자 지정

바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사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근거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 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라.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마.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 ·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 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 시행
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1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국가기관 등의 장이 해당 성희롱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0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2.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 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기관 · 단체에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자체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 마련
4.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5. 성폭력 고충담당자 지정
6. 해당 기관 · 단체 내 성폭력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그 밖에 해당 기관 · 단체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조의3(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이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예방조치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방안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세부 추진 내용

- 학교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방지(예방) 조치를 통합하여 계획, 추진할 수 있음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 및 방지(예방) 조치 결과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shp.mogef.go.kr)에 입력(제출)

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0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 **대상별 내용**
  - (필수) 학교에 소속된 사람: 성희롱,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 (필수) 학생: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 (선택) 학부모: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 **방법**

-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대상별 예방교육 실시
-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성폭력방지법」 제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방과후강사 등에게도 교육 실시
  -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대면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 유형별 폭력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 통합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 시간, 교육 방법, 대면 교육 시 강사와 사전 협의 후 강의계획서 작성 등을 포함

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방법**: 성희롱 방지조치와 성폭력 방지조치를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음
- **내용**: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계획
-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 성희롱·성폭력 고충담당자 지정
- 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 시행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수립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방법**
  - 성희롱 예방지침과 성폭력 예방지침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을 참조하여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 지침 제정
- **내용**: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도교육청 지침 참고)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방법**
  - 독립된 공간의 고충 상담 창구를 마련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학교는 고충 상담 창구를 마련하되 독립된 공간일 필요는 없음
  - 사이버신고센터 설치·운영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학교는 제외
    * 학교 홈페이지 등에 교육(지원)청의 사이버신고센터 안내·연계하는 방법으로 가능

마 성고충상담원의 지정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지정 방법**
  - 고충 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고충·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남녀 각 1명 이상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총 2인 이상 지정)
  - 어느 한 성(性)이 5인 미만인 경우 남녀 구분 없이 2인 이상 지정
  -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 이상의 고충상담원 지정 가능
  - 아래의 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지정

요건(권장)	• 성인지적 태도를 갖추고 있어서 사안처리에 적극적인 교원 • 성희롱, 성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교원 •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는 교원 • 공정한 판단 능력과 태도를 갖춘 교원

[표 3-1] 성고충상담원 지정(예시) * 학교 규모와 여건에 따라 다름

고충상담창구	담당자			비고
	직	성명	성별	
OO실	OO부장		남	
	OO교사		여	

- **성고충상담원의 역할**
  - 피·가해교직원 상담
  - 사안에 대한 신고·접수
  - 사안에 대한 사실확인
    ※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조사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기구, 상담(교)사, 성고충상담원이 할 수 있음(「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 (피해자가 교직원이고 원하는 경우) 조정 및 중재
    ※ 외부의 조정 및 중재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도 있음

피해교직원이 조정 및 중재를 원하는 경우	• 가해교직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 • 가해교직원의 합의 의사 등을 확인 • 성고충상담창구를 통하여 조정 및 중재 진행 ※ 동의 없이 피해교직원과 가해교직원을 대면시키지 않음

  - (성고충상담원이 간사인 경우) 사안에 대한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진행

- **성고충상담원 교육**
  -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 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3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이수하되, 교육기관에 의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6개월 이내 반드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함

  ※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에 따르면, 교육 수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이수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재지정된 고충상담원은 3년 이내에 1회는 반드시 이수해야 함

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이하 '성고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를 포함하여야 함
  - 이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 관리자(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가 가해자일 경우 등 시도교육청 지침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의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사안 심의 가능

참고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구성권자	구성 방법	구성 범위	비고
학교장	임명 또는 위촉	7명 이상 (2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 포함)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 상시 종사자 30인 미만의 학교는 여건에 따라 축소하여 구성할 수 있음

[표 3-2]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예시)

* 학교 규모 및 여건에 따라 다름

성고충심의위원회		직위	성명	성별	비고
1	위원장	교감		여	
2	위원	교무부장		남	
3	위원	생활인권부장		여	
4	위원	연구부장		남	
5	위원	교사		남	
6	위원	변호사		여	외부위원
7	위원	○○성폭력상담소 소장		남	외부위원
간사	성고충상담원	○○교사		여	상담 및 사실확인에 참여한 고충상담원은 당해 사건의 위원으로서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Q & A **성고충상담원을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나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고충상담원은 성고충에 대한 상담 및 사실확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담 및 사실확인 업무를 수행한 성고충상담원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어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상담 및 사실확인에 참여한 성고충상담원을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참석시켜 상담 내용과 사실확인 과정에서의 쟁점을 보고하게 하여, 심의위원들의 사건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지위 및 심의사항**
  -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피해자의 보호,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 자체 지침에 의해 설치한 비법정(자문)기구임
  - 심의사항(예시)

①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②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③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

-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 해촉**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하되, 성고충상담원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음
  -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당연직 위원의 유무, 위원의 임기, 해촉 사유 등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소집**
  - 소집 주체: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 소집 요건: 다음의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을 심의(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① 피해자가 교직원인 사안
②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가 교직원인 사안인 경우
(단, 피해학생이 성고충심의위원회 미개최동의서를 제출 시 미개최 가능)

  - 개최 기한: 위 사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완료(10일 연장 가능)해야 함. 사실확인이 완료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야 함
  - 개최통지 방식: 피·가해자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보. 다만,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음

-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 제척: 위원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됨

(제척 사유)
①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피: 위원에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가해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써 기피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함(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기피 사유)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회피: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음

• **개의·의결 및 심의방식**

-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함
-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피·가해자에게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 다만, 참석이 어려운 경우 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진술 가능
- 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가해자 동선 및 대기실을 분리하여 운영

• **성고충상담원 및 성고충심의위원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관련 법령	비밀유지의무 대상자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 개별 법령에 따른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부여됨.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안 내용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성고충상담원, 성고충심의위원회 내부위원은 교직원으로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음(「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 그 밖의 비밀누설 금지 근거 조항: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 관계 법령(「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상 성고충상담원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준수 의무를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Q & A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에게 비밀 유지 서약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사안 내용과 관련하여 외부로 누설되는 경우,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해당될 수 있을뿐더러,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고충상담원과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보장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위원들에게 사안 처리와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해줄 것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 **수당과 여비**
  -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름

- **정보공개**
  -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함

사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 **근거**:「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 **발생사실 통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
-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 재발방지대책 보고: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재발방지대책 보고는 생략할 수 없음
  - 단, 기관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해당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장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3. 4. 18.) 및 시행(2024. 4. 19.)
- **재발방지대책의 내용:**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의3)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

Ⅳ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의 개관

1.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2. 성희롱·성폭력 사안별 위원회
3. 피·가해 대상별 위원회 운영
4. 피·가해 대상별 사실확인
5.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시 주체별 역할

1.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1단계 **신고 및 접수**	2단계 **사실확인**	3단계 **심의 및 조치결정**	4단계 **조치이행**	5단계 **재발방지대책 수립, 제출**
1) 인지 및 상담 2) 신고 접수 3) 교육(지원)청 보고 및 수사기관 신고 4) 여성가족부 발생 통보 5) 분리 및 초기대응	1) 사실확인 2) 사실확인 결과 보고	1) 대상별 위원회 개최 및 심의 2) 조치결정 3) 심의 및 조치결정 통보	1) 조치이행 2) 조치불복	1) 재발방지대책 수립 2) 재발방지대책 여성가족부에 제출

※ 단계별 세부 내용은 사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2.
성희롱·성폭력 사안별 위원회

[표 4-1]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별 위원회

구분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선도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처리사안	학교폭력 사안	학교규칙을 위반하여 징계가 필요한 사안	교직원과 관련된 성희롱·성폭력 사안	교원이 피해자인 교육활동 침해행위 (성희롱·성폭력) 사안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학교규칙 (「초·중등교육법」관련)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관련)	「교원지위법」
지위 (성격)	법정기구	비법정기구	비법정기구	법정기구
설치단위 (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학교, 교육지원청	학교, 시도교육청
구성	·10인 이상 50명 이내 ·전체 위원의 1/3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위촉	학교별 규정에 따라 상이	·위원장 포함 7인 이상으로 위촉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 ·교원이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해서는 안 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학생인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다루는 법정기구임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는 학교 규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내리는 비법정기구임
-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교직원과 관련된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다루는 비법정기구임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 중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성폭력 범죄, 성적 언동 등)를 다루는 법정기구임

3.
피·가해 대상별 위원회 운영

[표 4-2] 성희롱·성폭력 피·가해 대상별 주관 위원회(기관)

피해 \ 가해	학생	교원	직원
학생	(피·가해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교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가해직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교원	(피해교원, 가해(침해)학생) 교권보호위원회	(피해교원) 성고충심의위원회	(피해교원) 성고충심의위원회
		(가해교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가해직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직원	(피해직원) 성고충심의위원회	(피해직원) 성고충심의위원회	(피해직원) 성고충심의위원회
	(가해학생)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가해교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가해직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함
- 사안 당사자에 대한 조사는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이 담당할 수 있음

※ 단, 가해 교직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위한 조사, 감사 등은 인사권, 감사권이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함,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 사립학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감사 진행 여부 등은 시도교육청 지침·판단에 따름

※ 학교장에게 임용권이 있는 일부 교직원(기간제 교원 등)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부터 처분까지 가능

- **피해자가 학생인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법」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23)을 따라야 함**
  -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안처리를 진행
  -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이 아닌 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
  - 가해자가 교직원인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 대상 사안이 아님. 단, 피해학생 측이 보호 조치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미개최 동의를 받고 종결 가능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능

- **피해자가 교원, 가해자가 학생인 성희롱·성폭력 사안(교육활동 침해사안)은 「교원지위법」 및 「교육활동보호 매뉴얼」(교육부, 2022)을 따라야 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피해교원이 원하는 경우에 사안처리를 진행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교원 및 가해(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가능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가능함. 이 경우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가능

- **피해자가 교직원, 가해자가 교직원인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 피해교직원이 원하는 경우에 사안처리를 진행
  -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재발 방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논의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에서의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가능
  - 가해 교직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위한 조사, 감사 등은 인사권, 감사권이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 단, 학교장에게 임용권이 있는 일부 교직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부터 처분까지 가능

- **피해자가 '직원'인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 피해직원이 원하는 경우에 사안처리를 진행
  -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피해직원에 대한 조치 가능
  -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 개최 가능

4.
피·가해 대상별 사실확인

[표 4-3] 성희롱·성폭력 피·가해 대상별 사실확인 주체

가해 / 피해	학생	교원	직원
학생	(피·가해학생) 전담기구 및 소속교원	(피해학생) 전담기구 및 소속교원	(피해학생) 전담기구 및 소속교원
		(가해교원) 성고충상담원	(가해직원) 성고충상담원
교원	(피해교원, 가해학생) 교권업무담당자	(피·가해교원) 성고충상담원 교육(지원)청	(피해교원, 가해직원) 성고충상담원 교육(지원)청
직원	(피해직원) 성고충상담원	(피해직원, 가해교원) 성고충상담원 교육(지원)청	(피·가해직원) 성고충상담원 교육(지원)청
	(가해학생) 생활인권업무담당자		

- 위 사실확인 주체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학교폭력예방법」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원지위법」 및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등에 따른 것으로서 표준적인 예시임
- 교육감 및 학교장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범위 내에서 체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실확인을 위한 각종 양식은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경우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의 양식 활용이 원칙임

※ 학교에서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한 사실관계확인은 학교 내에서 실시하고, 가해자 처분을 위한 조사는 이에 대한 권한이 있는 기구(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함

- **피해자가 학생인 성희롱·성폭력 사안**
  -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이 사안조사를 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상담원이 조사 가능

- **피해자가 교원, 가해자가 학생인 교육활동 침해행위**
  - 교권업무담당자가 사안조사를 진행
  -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상담원이 피해교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 가능

- **피해자가 교직원, 가해자가 교직원인 성희롱·성폭력 사안**
  - 학교 내 성고충상담원은 해당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상담을 실시함
  - 가해교직원 처분을 위한 조사나 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단, 임용권이 학교장에게 있는 일부 교직원(기간제교원 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부터 처분까지 가능
  -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학교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교육(지원)청 사안처리 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피해자가 직원인 성희롱·성폭력 사안**
  - 성고충상담원이 사실확인을 진행
  -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학교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교육(지원)청 사안처리 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학칙 위반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사안**
  - 생활인권업무담당자가 조사하되, 성고충상담원이 필요시 조사 가능

5.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시 주체별 역할

가 학교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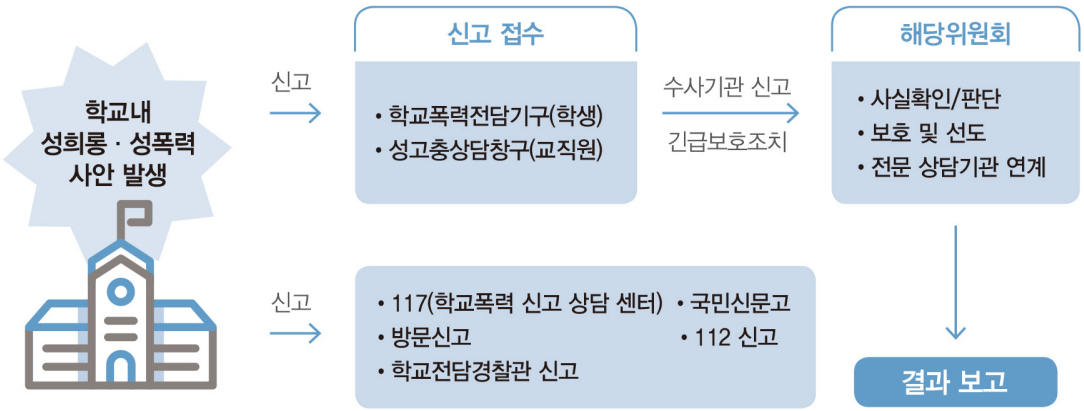

- **학교장**
  -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 해결 총책임자로서 사안의 정확한 파악, 사안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련 구성원 소집 및 업무지시, 그 결과를 수시 보고 받고 모니터링 실시
  - 사안 보고를 받은 즉시 학생 사안의 경우 신고 의무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 및 교육청 보고토록 조치
  - 소문 등을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와의 의사소통창구 일원화
  - 사안 관련 가정통신문 배포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글 등은 오히려 소문 유포나 언론보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검토
  - 상호 존중,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장이 먼저 나서서 노력해야 함.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외 사각지대(기숙사 등)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예방 활동에 노력

참고

[학교장의 유의 사항]

- 법에 정한 신고의무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한 학생이나 교사를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신중한 대응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는 교원을 사건 처리 창구로 일원화하되, 업무 과중 및 교내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 학교장은 평소에 학교 내 양성평등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며, 사안이 발생했을 시 사안 처리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안대응의 모든 단계에 적극 관심을 두고 지원해야 함

- **교직원**
  - 교직원은 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피해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피해학생의 요구사항과 사실관계를 파악
  - 피해학생의 치료와 더불어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성폭력전담기관 등 전문기관과 신속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음
  - 사건을 숨기거나 학교 내에서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야 함
  -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문의 및 상담을 해야 함
  - 다른 교사나 학생들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신고 사실이나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도록 지도
  - 학교 구성원들에게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지지 및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킴

- **성고충상담원**
  - 성희롱·성폭력은 축소·은폐되거나 재발, 지속될 수 있으므로 학교장과 성고충상담원의 사안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중요
  - 교직원 간 성희롱 사안일 경우 학교 내부의 성고충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교내 창구를 이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상급 기관 및 외부 기관 연계 및 안내
  - 교내 상담창구의 이용과 소송 등은 같이 진행 가능함을 상담 과정에서 안내

나 시도교육(지원)청 차원

- **시도교육(지원)청**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활동 자료를 교육(지원)청 단위 개발 및 단위 학교에 배포
  -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 및 학교 현장 지원
  - 교직원이 가해자인 사안에 대해 가해교직원 조사, 감사 및 처분 등을 수행.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

V 피·가해 대상별 사안처리 절차

1.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2. 교직원이 피해자인 경우

1.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사안처리 절차

가 학생[피해]-학생[가해] 사안처리

[표 5-1] 학생[피해]-학생[가해] 사안 주관 위원회

가해 / 피해	학생
학생	(피·가해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유의 사항]
- 학생이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예방법'과 동법 시행령,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23)의 기본 절차 및 구체적인 안내를 따라야 함
- 동시에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없는 성폭력방지법상의 발생 보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은 본 가이드에 따름

※ 본 가이드에 기술된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학교폭력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23)에 따랐으므로, 이후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과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람

- **학생[피해] - 학생[가해] 단계별 사안처리 절차**

1단계: 신고 및 접수

1) 인지 및 상담
- 학교가 사안을 인지하고 피해학생이 최초로 피해 사실에 대하여 고충을 호소하는 단계
- 담당자는 피해학생에게 사안 처리 절차 및 내용, 진행 과정, 준비 사항, 보호조치 등을 설명해 줌
-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학생의 상담 사실과 내용이 주위에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
-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외부전문기관의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 필요시 전문상담기관 협조 요청(117,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 등)
- 상담 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사안 접수 및 수사기관에 신고

2) 신고 접수 및 분리

- 117 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성희롱·성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에 기록
- 학교장에 보고,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발생사실 및 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

  ※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사안처리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안처리를 해야 함
- 관련 학생이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해당 학교에 통보
- 필요시 피·가해학생을 즉시 격리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해야 함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 사안 인지(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

3) 교육(지원)청 보고(학교폭력)

- 사안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

  ※ 긴급하거나 중대 사안일 경우 유선으로 보고 후 서면 보고

4) 성범죄, 수사기관 신고

-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사안*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성범죄

  ** 경찰청(112),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117), 학교전담경찰관
- 필요시 여성긴급 상담전화(☎ 1366), 거주 지역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전문병원과 연계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학교장 및 교직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음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신고를 먼저 했더라도, 담당자는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음. 다만, 수사가 개시될 정도의 정보가 알려져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5) 여성가족부 발생 통보(성폭력)

- 근거: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 피해학생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

  ※ 2021. 7. 13. 이후 발생한 학생 간 발생한 성폭력 사안에 대해 적용함
- 교육(지원)청 성폭력 발생사실 보고: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6) 초기 대응

[피해학생 응급조치]

- 필요시 응급조치 실시, 119(응급의료센터) 등 신속히 병원 이송, 피해학생 보호
- 응급 이송 시 보건교사 또는 피해학생과 동일한 성을 가진 교직원 동행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실에서 상처 확인 및 치료를 위한 치료 시, 치료기록을 남겨두도록 함
- 사안 발생 현장이 교내일 경우, 증거 물품 보관, 현장 보존하여 수사기관에 의뢰
- 학교 내 상담실, 위(Wee)센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치료 지원
- 사안 발생 현장에 CCTV가 있을 경우 CCTV 영상을 확보

[관련학생 안전조치]

- 피해·가해학생 분리 조치는 최우선적인 처리사항으로 피해자의 심신 안정, 신상정보 등에 대한 비밀 유지, 인권 보호 등에 주안점을 둬야 함
-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이나 협박 등을 당하고 있는지 안전 여부 파악
- 피해사실과 피해자 신원이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
  (비밀누설 금지 및 2차 피해 방지)
- 사안을 목격하거나 현장에 있었던 학생도 심리적·정서적 충격을 받아 문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가해학생 역시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교사가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신속히 보호자에게 연락, 가해학생에게 지나친 질책 및 감정적 대처 유의

[학교장 긴급조치(필요시)]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2차 피해 방지]

- 학교폭력 전담교사 및 성폭력 사안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이외의 사람에게 사안 관련 철저한 비밀유지를 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함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이외의 목격자 등 관련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안 관련 철저한 비밀유지를 강조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가능성 고지

2단계: 사안조사(사실확인)

1) 사안조사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서면조사, 해당학생 및 목격자의 면담조사, 사안 발생 현장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하도록 함
- 전담기구는 필요시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음
- 면담 시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가해학생 및 보호자, 목격자 등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도록 함
- 전문상담교사 등 상담전문가에게 학생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하도록 함
- 피해학생이 피해사실을 떠올리도록 종용하거나 사건 관련 질문을 반복하지 않아야 함
- 피해학생의 평상시 품행이나 태도 등을 근거로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발언이나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함
- 사안 조사 시 비밀유지 및 대상자 신변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에 특별히 유의해야 함

2) 증거 확보

- 성폭력 사안의 경우 사안을 최초로 인지하거나 신고받은 교원 혹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담당 교원은 사안 발생이 교내에서 일어났을 경우 수사를 위해 현장을 보존하고 훼손하지 않아야 함
- 피해학생 측이 고소할 의사가 없더라도 이후 마음이 바뀔 수 있기에 증거물을 채취해 두도록 권유

3) 보호자 면담

-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
- 학교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학생과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 사안을 축소하는 태도 등을 지양하고 공정하게 사안을 조사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것을 알려줌
- 보호자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며 경청하도록 함
- 당사자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당사자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음

4) 사안조사 결과 보고

- 전담기구 소속 교사는 학생, 보호자, 목격자, 담임교사 등을 면담 조사한 후에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함
- 사안조사 보고서를 학교장에게 보고함
- 전담기구 소속 교사(책임교사 등)는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사안조사 결과 및 향후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

5)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

※ 학생 간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경우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법령상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 처리가 가능함. 다만, 피해학생의 심리상태와 피해 정도,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함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장 자체 해결의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심의함. 이때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는 'A 학생', 'B 학생' 등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전담기구 심의를 생략할 수 없음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서면 제출)

- 학교장은 자체 해결의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학교장 자체 해결 시 결과 보고 : 학교장 자체 해결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

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되지 않는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함
- 학교는 신고·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사안조사,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결정 및 시행,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해당 절차의 완료를 7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음

3단계: 심의 및 조치 결정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단계와 내용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세부 내용은 관련 지침 참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개최 (7일 이내 연기 가능) •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의 경우 관련 전문가 참석이 바람직함 • 심의위원회 참석안내서 송부 –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서면 진술도 가능)

⇩

심의 및 의결, 결정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 피·가해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고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위 의결에 따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 •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조치 결정 통보(문서)

2)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조치 의결

구분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가해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조치사항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비고	*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교육환경 변경) – 단, 성폭력범죄 피해학생의 전학 요청 시, 학교장은 반드시 교육감(장)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함(성폭력방지법 제7조)	

3) 교육장의 조치 결정

-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결정함

4) 조치 결정 통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사항에 대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측에 서면으로 통보함
- 조치결정 통보서에는 조치의 내용 및 조치원인, 불복절차 안내 등을 기재함

4단계: 조치이행

1) 조치이행 및 결과 보고

- 교육장은 조치결정 후 학교에 공문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하며 이때, 학교장은 교육장의 조치결정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함
- 학교장은 조치결정을 통보받은 후 조치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이행한 후에는 교육(지원)청에 그 결과를 보고함
- 가해학생이 조치를 통보받고 3개월 이내에 미이행할 경우, 학교장은 미이행 학생 명단을 교육장(심의위원회)에 보고함. 가해학생이 조치이행 거부 또는 기피 시 추가 조치가 가능함
- 학교는 피해학생의 해당 조치에 필요한 기관(교육감 지정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기관) 등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경우, 학교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함. 구체적인 작성 ·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따름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음

2) 조치 결과 불복

- 피해학생: 본인이 받은 보호 조치, 가해학생이 받은 선도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가해학생: 본인이 받은 선도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5단계: 재발방지 대책 수립·제출

- 근거: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재발방지대책 보고의 생략은 불가능
  ※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교육(지원)청 보고는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 재발방지대책의 내용: 아래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

-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의3)

나 학생[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처리

[표 5-2] 학생[피해]-교직원[가해] 사안 주관 위원회(기관)

가해 / 피해	교원	직원
학생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교원) (학교)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감사·인사 기구	(가해직원) (학교)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감사·인사 기구

[유의 사항]
- 학생이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23)의 기본 절차 및 구체적인 안내를 따라야 함
- 가해자가 교직원인 경우,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2차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가해 교직원 처분을 위한 조사, 감사 등은 인사권, 감사권, 징계권이 있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수행함.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단, 학교장에게 임용권이 있는 일부 교직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부터 처분까지 가능함

  ※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 재발방지교육 실시 등 학교장의 업무분장 및 복무 권한 내에 있는 사항은 피해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가해자 조치에 관한 심의 가능

• 학생[피해] – 교직원[가해] 단계별 사안처리 절차

1단계: 신고 및 접수

1) 인지 및 상담

- 피해학생의 상담이나 제3자 신고, 학교에서 인지한 경우 사안 처리 가능
- 담당자는 피해학생에게 사안 처리 절차나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안내함
- 상담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경청하되, 성희롱·성폭력 여부를 판단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도록 주의함
-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상담 사실과 내용이 주위에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함

2) 신고 접수

- 피해학생, 보호자, 제3자(교사,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하여 신고 가능
- 신고서 및 접수 대장 작성을 통하여 피해학생 및 목격자의 초기 진술 기록
- 신고서 작성 시 발생 시간, 장소, 행위 내용, 횟수 등 구체적 피해사실 파악
- 학교장에 보고,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발생사실 및 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

참고

[신고 접수 시 유의 사항]

1. 피해자가 작성한 신고서를 임의로 수정하지 않도록 유의함
   - 피해자가 작성한 신고서(진술서)가 담당자가 목격자 등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신고서를 직접 수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정 지시를 하지 않도록 유의함
   - 담당자가 신고서를 수정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사건에 개입하거나 2차 피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고서는 피해자가 작성한 신고내용 그대로 접수함
   - 신고서 중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이나 다른 증거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함
2. 당사자에게 상호 간 진술 내용을 불필요하게 전달하지 않도록 유의함
   - 피해자나 가해자의 상호 진술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신고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상호 간 진술을 전달하지 않도록 유의함
   - 피해자 및 가해자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진술 및 상호 간 진술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인지를 확인함. 담당자나 관리자가 비공식적으로 당사자를 불러서 사실 확인하거나 상대방의 진술을 사전 전달하는 것은 오히려 조사 절차를 방해할 수도 있음

Q & A 가해교사가 피해학생에게 사과 및 합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사전에 피해학생이 '가해자를 만나고 싶다' 등 명시적 의사를 표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조사 기간 가해자와 피해학생 간의 일체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사과하려는 목적으로 접촉하였더라도, 피해학생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접근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두렵거나 또 다른 2차 피해를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사과 및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지 말고, 학교 측을 통해서 연락하도록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성고충상담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가해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교육(지원)청 보고(학교폭력)

- 사안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

  ※ 긴급하거나 중대 사안일 경우 유선으로 보고 후 서면 보고

- 성희롱·성폭력 사안(스쿨미투 사건 포함) 보고는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예시) 사안 인지 후 즉시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

4)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수사기관 신고

- 성범죄 사안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 경찰청(112),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117), 학교전담경찰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공문 발송

  * 아동학대범죄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 신고 시에는 피·가해자에 대한 상세 정보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알려주어야 하며, 수사기관에서 학교로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

- 필요시 여성긴급 상담전화(☎ 1366), 거주 지역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전문병원과 연계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학교장 및 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음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신고를 먼저 했더라도, 담당자는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음. 다만, 수사가 개시될 정도의 정보가 알려져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가능

-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5) 여성가족부 통보(성희롱·성폭력)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 피해학생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공문으로 통보함
- 교육(지원)청에 성희롱·성폭력 발생사실 보고는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6) 분리 조치 및 초기 대응

[피해학생과 가해자 분리]

- 피해학생의 심신 안정 등의 피해자 보호, 공정한 조사 절차 진행을 위하여 사안 접수 시 분리 조치 시행
- (피해학생과 가해자 분리) 학교폭력 사안 인지(접수) 후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음(피해학생에게 반대 의사 확인, 물리적 공간 분리뿐 아니라 유선 연락, 문자 등 온·오프라인 분리조치 등) 내용
- 학교장은 사안의 경중,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분리 조치를 시행
-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분리 조치 관련 사항은 **교육(지원)청과 협의**

* **분리의 예시**: 수업 배제, 업무배제 또는 변경, (임시)담임교체, 재택근무, 근무 장소 변경, 동선 분리, 연가 등의 승인 등

[피해학생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 필요시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신속히 병원 이송, 보건실 방문 시 치료기록 보관
- 교내 상담실, 위(Wee)센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지원
- 사안 발생 현장에 CCTV가 있을 경우 CCTV 영상을 확보
- 사안 발생 현장이 교내일 경우, 증거 물품 보관, 현장 보존하여 수사기관 의뢰
- 피해학생이 사안 조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결석할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출석 인정이 가능함

[학교장 긴급조치(필요시)]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2차 피해 방지]

- 가해자를 포함하여 목격자 등 관련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안 관련 철저한 비밀 유지를 강조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가능성 고지
- 가해자는 자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자료 제출이나 추가 조사 요청 등을 할 수 있으나,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소문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등은 2차 피해로써 처벌될 수 있음

2단계: 사안조사(사실확인)

1) 사안조사(사실확인)

- 발생 장소, 시간, 피해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육하원칙에 맞게 질문
- 관련자 조사 순서는 피해학생 – 참고인(목격자 등) – 가해자 순으로 권장
-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전화, 이메일로 문답서 작성할 수 있음
- 사안 발생 현장 확인 및 관련 증거를(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사진, 녹음파일 등) 수집할 수 있음
- 필요시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음
- 사안 조사에 참여한 사안처리지원단, 조사위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도록 함
- 구체적 사안 조사 주체 및 방법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표 5-3] 대상별 조사내용

대상	조사내용
피해학생	• 피해학생으로부터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시 구체적인 행동· 말 등을 조사 • 일회성 사안이 아닌 경우 장소, 지속 기간, 피해 횟수, 피해 정도 모두 기록 • 피해학생이 고소 의사가 없더라도 이후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채취하고 삭제하지 않도록 권유 • 피해자의 요구사항(분리조치, 인사조치 요청 등)을 파악 • 피해사실을 떠올리도록 종용하거나 사건 관련 질문을 반복하지 않아야 함 • 평상시 품행이나 태도 등을 근거로 피해학생을 비난하지 않도록 유의함 • 피해학생의 인격·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 • 피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정확한 사실 확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1명씩 다른 장소에서 따로 조사할 것 • 조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조사를 담당할 수 있음 • 피해학생이 원할 경우 동성(同性)의 조사자가 진행 •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조사 시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조사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음(다만 조사 방해 시 제한 가능)
참고인	• 당사자 간의 사실 관계에 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필요함 • 당사자로부터 사실 확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필요함 • 전해 들은 내용이 아니라 직접 목격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하게 함
가해교직원	• 피해학생 보호 차원에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및 상담을 실시함 • 육하원칙에 따라 행위시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 등을 확인·기록 • 일회성 사안이 아닌 경우 장소, 지속 기간, 피해 횟수, 피해 정도 모두 기록 • 충분한 설명 기회를 제공하고 예단이나 선입견 배제 •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을 활용하거나, 2~4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외부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음 • 가해자가 왜곡된 성인식 등을 가지고 있어도, 조사자가 나서서 훈계하는 등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성인식 개선은 별도 재발방지교육 실시) • 소명을 위한 관련 증거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다수 교직원이 관련된 경우 짧은 시간 안에 동시에 사실확인을 하도록 함 • 가해자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사실확인을 하려고 연락하거나 주변인에게 소문 유포하는 것은 2차 피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2) 증거 확보

- 성폭력 사안의 경우 사안을 최초로 인지하거나 신고받은 교원 혹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담당 교원은 사안 발생이 교내에서 일어났을 경우 수사를 위해 현장을 보존하고 훼손하지 않아야 함
- 피해학생 측이 고소할 의사가 없더라도 이후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증거물을 채취해 두도록 권유

3) 보호자 면담

-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침착하게 대응
- 사안 발생 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사안처리 절차를 안내함
- 사안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상대방 진술이나 사안 조사 결과를 알려줄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함
- 피해자·목격자 등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당사자 동의 없이 상대방이나 조사와 관련 없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음

4) 조사결과 보고

- 담당자는 당사자 진술 및 제출 자료, 목격자 진술 및 기타 증거자료 등을 정리하여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함

5)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 불필요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 대상이 아님

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가 교직원인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가 가능함
- 다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음(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미개최 동의를 받아 교육지원청에 보고)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시, 심의위원회는 가해교직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심의위원회 참석 여부와 진술, 서면으로 의견 제출 등을 검토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음
- 피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위한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개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피해학생이 성고충 심의위원회 미개최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최하지 않음

3단계: 심의 및 조치 결정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단계와 내용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세부 내용은 관련 지침 참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개최 (7일 이내 연기 가능) •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의 경우 관련 전문가 참석이 바람직 • 심의위원회 참석안내서 송부 –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서면 진술도 가능)
⇩	
심의 및 의결, 결정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을 심의하고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위 의결에 따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 •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조치결정 통보(문서)

2) 성고충심의위원회 진행 단계와 내용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하여 7인 이상 •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안내서 송부 • 가해교직원,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서면 진술도 가능)
⇩	
심의 및 의결, 결정	•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의 • 위원들에게 비밀유지의무 안내(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 제척·기피·회피 여부 확인 • 사실확인 결과 보고 및 쟁점 파악 • 피해학생 및 가해교직원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 결과 학교장에게 송부 • (학교장) 가·피해자에게 심의 결과 송부

3) 피해학생 조치

구분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조치사항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구분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비고	*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측의 의사를 고려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교육환경 변경) - 단, 성폭력범죄 피해학생의 전학 요청 시, 학교장은 반드시 교육감(장)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함(「성폭력방지법」 제7조)

4) 가해교직원 조치

-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교직원에 대한 조치 결정이 제한적임

  ※ 인사권이 없는 학교의 장에게 징계 등 처분에 대한 사항을 심의·권고할 수 없음

-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가해교직원에 대한 감사 및 처분 등은 인사권, 감사권, 징계권이 있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수행함.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단, 학교장에게 임용권이 있는 일부 교직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부터 처분까지 가능함
- 학교장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감사관, 인사 담당 부서 등에 통보할 수 있음

  * 단,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상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 해당 기관의 업무 권한에 따라 심의 범위는 조정될 수 있음

5) 조치결과 통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사항에 대해 피해학생 측에 서면으로 통보함
- 학교장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피해학생 및 가해교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심의 결과 통보서에는 조치의 내용 및 조치원인 등을 기재함

4단계: 조치이행

1) 조치이행 및 결과 보고(학교폭력, 성희롱·성폭력)

- 학교장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이행한 후에는 교육(지원)청에 그 결과를 보고함
-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에 보고함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는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2) 조치결과 불복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므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불가능함

> "~ 위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인사조치 결정 및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원고(가해교직원)와 피해자를 분리시킨다는 의미의 사전적, 절차적 성격을 갖는 조치로 보일 뿐, 위 조치결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전보조치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구합30734)

-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상 본인이 받은 보호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가능

5단계: 재발방지 대책 수립·제출

1) 재발방지대책 수립·보고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재발방지대책 보고의 생략은 불가능

  ※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의 교육(지원)청 보고는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 재발방지대책의 내용: 아래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

> -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의3)

-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재발방지교육),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참고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설문 시 고려사항]

- **학교 문화 개선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 학교 전체 구성원을 상대로 학교 문화 개선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실시
-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는 사건처리절차 종료 이후에 학교 문화 개선 등을 위하여 이후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익명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 설문 실시
- 학교 내 조직문화의 실태를 살펴보고 추후 변화를 위한 참고자료로써 활용함
- 전수조사 실시 방법은 학교장의 판단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컨설팅 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음

- **사실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 ① 피·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② 추가 피·가해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기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전수조사 실시
-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오히려 소문 유포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인 문항으로 구성
- 포괄적인 문항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특정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함
- 학생들이 자유롭게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익명 응답을 허용하되, 기명으로 응답하여야만 실제 조사로 이어지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음을 설문 도입부에 명시
- 추가로 면담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온라인 신고센터 홈페이지 등을 안내하여 다양한 응답 기회 제공
- 전수조사 실시 방법은 학교장의 판단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교육(지원)청·수사기관·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조사 진행

2) 심의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조치 이행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재발방지조치를 이행함
- 2차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2차 피해 발생 시 추가 조치를 실시함

2.
교직원이 피해자인 경우 사안처리 절차

가 교원[피해]-학생[가해] 사안처리

[표 5-4] 교원[피해]-학생[가해] 사안 주관 위원회

가해 / 피해	학생
교원	(피해교원, 가해학생) 교권보호위원회

[유의 사항]
- 교원이 교육활동 중에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교원지위법」 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피해교원과 가해(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사안처리 절차는 교원지위법 및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교육부, 2022)에 따라 처리함
- 다만,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가해학생 조치를 위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와 피해교원의 보호조치를 위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개최가 가능함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행위 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제2호)
- 그 밖에 「교육부고시」 제2조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제4호)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피해] – 학생[가해] 단계별 사안처리 절차

1단계: 신고 및 접수

1) 인지 및 상담

-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교권보호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하므로 인지·상담 단계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립 여부를 예단하지 않아야 함
- 인지 상담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해당 기관의 사안처리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
-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비밀보장에 대한 방침, 사안조사, 심의, 징계 절차, 규정, 관련 법령에 대해서 안내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함
-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원하면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외부 행정기관을 통한 사안 조치방안에 대해서도 안내해주어야 함
- 피해교원이 사안 접수 전에 성고충상담원 또는 교권업무담당자와 상담이 가능함을 안내함
- 피해교원에게 교권보호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피해 보호가 가능함을 설명하되, 피해교원과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동시에 가능한 교권보호위원회로의 사안처리가 원칙임을 설명함
- 성고충상담원은 피해교원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상담일지에 기록함

※ 아래의 설명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처리 절차를 기준으로 제시되었음

2) 사안 신고서 접수

- 피해교원은 사안처리를 원하는 경우 신고서(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성희롱·성폭력 사안 신고서)를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담당자 또는 성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해야 함
  ※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해(침해)학생 조치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를 통하여 가해학생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음
- 피해교원에게 화해·합의 등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보호자 통보

- 관련학생(침해학생) 보호자에게 발생사실 및 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함

4) 교육(지원)청 보고(교육활동 침해행위)

-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안은 유선보고를 우선으로 하고 이후 서면으로 보고
- 사안을 인지한 후 48시간 이내 보고하고 신속한 처리에 노력함
  ※ 필요시 수사기관 신고 가능(교직원이 피해자인 경우 의무는 아님)

5) 여성가족부 통보(성희롱·성폭력)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 피해교원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발생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 성희롱·성폭력 교육(지원)청 발생 보고는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6) 초기 대응

[분리 조치]

- 피해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교원, 가해(침해)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하도록 함. 공간이나 동선 분리 등의 물리적인 분리 조치가 필요함
  ※ 다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침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조치할 수 없음
-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를 대면시키지 않도록 함

[피해교원 안전조치]

- 피해교원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
- 응급처치나 심리 상담 연계 등의 보호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단계: 사안 조사(사실확인)

1) 사실확인

- 피해교원과 가해(침해)학생에 대한 조사는 교권보호 업무담당자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고충상담원이 피해교원뿐만 아니라 가해(침해)학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성고충심의위원회로 사안을 처리하는 경우, 성고충상담원(사안처리 지원단 및 조사위원회 포함)이 피해교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 양식을 활용하여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 본 매뉴얼의 양식(예: 문답지 등)을 활용할 수는 있음. 관련자가 다수일 경우 이들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분리하여 조사하도록 함

2) 증거확보

- 필요시 사안 발생 현장을 확인하고 증거(메일, 채팅 게시판, SNS, 사진, 녹음파일, CCTV 영상 등)를 수집

3단계: 심의 및 조치 결정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 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 (위원 위촉·임명) 학교의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위원을 위촉·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다만, 교원은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해서는 안 됨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학교 규칙으로 정한 기한 내에 신속하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교육부, 2022)에 따라 진행함

-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안내는 서면으로 피해교원 및 가해(침해)학생에게 보냄. 이때,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A 학생', 'B 교원' 등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피해교원 및 가해학생 측 대기 장소를 분리해서 준비함
- 심의 절차에서 피해교원 및 가해학생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함(서면진술서를 통해 진술 대체 가능)
-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심리상담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참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 수립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교원지위법」 제19조

3) 피해교원 및 가해(침해)학생 조치

[표 5-5] 피해교원 및 가해(침해)학생 조치

구분	피해교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원지위법」 제15조 제2항)	가해(침해)학생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원지위법」 제18조)
조치사항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구분	피해교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원지위법」 제15조 제2항)	가해(침해)학생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원지위법」 제18조)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비고	- 그 밖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특별휴가, 비정기 전보 요청 등) - 피해교원 보호 조치 비용은 침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함(교원지위법 제15조 제5항)	

참고

[성고충심의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처리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가해학생 조치를 위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와 피해교원의 보호조치를 위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개최가 가능함

구분	피해교원 (성고충심의위원회)	가해학생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조치사항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 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부서 전환 5. 그 밖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3) 학교장의 조치결정

-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결정함

4) 조치결정 통보

-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결정사항에 대해 피해교원 및 가해(침해)학생 측에 서면으로 발송함
- 조치결과 통보서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예: 성폭력범죄, 성적 언동), 조치의 내용 및 조치원인, 재심 등 불복절차 안내 등을 기재

4단계: 조치이행

1) 조치이행 및 결과 보고

-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 조치 결과 등을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함

2) 조치결과 불복

- 피해교원: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가해(침해)학생:
  - 전학 및 퇴학: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사립학교 포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립학교는 민사소송)
  - 그 외 조치: 행정심판, 행정소송(다만, 사립학교는 민사소송)

5단계: 재발방지대책 수립 · 제출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재발방지대책 보고의 생략은 불가능
  ※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교육(지원)청 보고는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 재발방지대책의 내용: 아래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

-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의3)

-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재발방지교육),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나 교직원[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처리

[표 5-6] 교직원[피해]-교직원[가해] 사안 주관 위원회(기관)

가해 / 피해	교원	직원
교원	(피해교직원) 성고충심의위원회 (가해교직원) (학교)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감사·인사 기구	
직원		

[유의 사항]
-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를 다루는 기구로써, 학생이 아닌 교직원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가해교직원의 처분을 위한 감사 등은 인사권, 감사권, 징계권이 있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수행함.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단, 학교장에게 임용권이 있는 일부 교직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부터 처분까지 가능함

- **교직원[피해] – 교직원[가해] 단계별 사안처리 절차**

※ 아래의 설명은 성고충심의위원회 처리 절차를 기준으로 제시되었음

1단계: 신고 및 접수

1) 인지 및 상담
- 피해교직원은 전화, 통신, 서면 또는 방문을 통해 교내 성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함
- 피해교직원이 교내 성고충상담창구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교육(지원)청에 직접 상담·신고 가능
- 이 외에도 외부 성폭력 상담 전문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
-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하는 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등이 있음

2) 사안 신고서 접수
- 사안처리를 위해서 피해교직원은 신고서(성희롱·성폭력 사안 신고서)를 성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해야 함. 접수 이전의 사안 관련 면담 기록은 상담 기록에 속하며 신고 절차를 대체할 수 없음

- 신고인이 문서를 작성하기 어려울 때는 상담원 참관하에 구술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음
- 피해교직원이 가해교직원과의 조정 및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 가해교직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안에 대한 의견과 합의 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성고충상담창구를 통한 당사자 간 조정 및 중재를 진행할 수 있음
  ※ 성고충상담창구는 안내 및 지원의 기능을 수행할 뿐 주체는 아님
  ※ 중재 과정에서 가해교직원과 피해교직원을 대면시키지 않음
- 화해 및 합의가 되어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음

3) 수사기관 신고

- 학교장과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는 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간음
-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4) 여성가족부 통보(성희롱·성폭력)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 피해교직원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발생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 교육(지원)청 보고(성희롱·성폭력):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5) 초기 대응

[분리 조치]

- 피해교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교직원과 가해교직원을 분리함
- 공간이나 동선 분리 등의 물리적인 분리 조치가 필요함
-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를 대면시키지 않도록 주의함

[피해교직원 안전조치]

- 피해교원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응급처치나 심리 상담 연계 등의 보호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2단계: 사실확인

1) 사실확인

- 피해교직원과 가해교직원에 대한 사실확인은 성고충상담원이 진행함
- 학교장은 학교 여건에 따라 2~4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음.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지원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사실확인을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기간의 연장이 가능함
- 사실확인은 진술 및 서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안 발생 현장 확인 및 관련 증거(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사진, 녹음파일, CCTV 영상 등)를 수집할 수 있음
- 다수 교직원이 관련된 경우 짧은 시간 안에 동시에 사실을 확인하도록 함
- 사실확인 시 조사위원회, 사안처리 지원단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음

〈사실확인 시 유의 사항〉
- 피해교직원이 원하는 성별의 성고충상담원에게 사실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 피해교직원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
- 가해교직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및 상담을 실시함
  ※ 가해교직원의 인사상 처분을 위한 조사 및 이후 처분 등의 절차는 인사·감사권이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함
- 피해 및 가해교직원 간의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3자로부터 목격담을 들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함. 또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2) 사실확인 결과 보고

- 성고충상담원은 사실확인 종료 후 사실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사건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함. 이때 조사자는 의견을 추가할 수 있음

참고

[성희롱 성폭력 사실확인 시 주의 사항]

• 사안 접수 및 문답서 작성
- 조사 관련 자료 수령 및 현황 파악
- 조사 대상자, 조사 방법, 질의 내용 및 순서 계획
- 발생 장소, 발생 시간 및 지속시간, 피해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육하원칙에 맞게 질문
- 관련자 조사 순서는 피해자 → 참고인(목격자 등) → 가해자 순으로 권장
- 모두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 전화, 이메일로 문답서 작성
- 대면 조사·서면 조사 시에는 당사자 서명이 꼭 포함되도록 함

- 조사 시 당사자를 포함하여 최소 인원으로 신속하게 진행, 다수 위원이 조사하여 당사자가 위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
- 성희롱 등의 판단 여부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몫이므로 당사자 조사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사실관계 조사에 충실해야 함
-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성희롱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으로 조사하거나 혹은 가해자의 진술이 거짓이어서 가해자로 단정 짓는다든가 등의 태도를 지양해야 함
- 사안 조사(사실확인) 절차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자에게 문의

• **당사자 등 관련자 조사[3)]**

〈피해자 조사〉

- 피해자가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고 이야기를 경청하되, 구체적인 사실이 빠져 있을 경우 다시 질문하도록 함
- 사안 진행과 관련된 의견(누구를 조사해달라, 무엇을 확인해달라 등)을 반영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파악
- 일회성 사안이 아닌 경우 발생 장소와 지속 기간, 피해 횟수, 피해 정도를 모두 조사하고 기록
- 성희롱·성폭력 판단을 위하여 당사자의 관계, 업무 관련성, 구체적 성적 언동, 이로 인한 피해자가 입은 피해 및 피해자의 심정이나 고충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사실 확인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각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각각 분리하여 조사
- 피해자가 원할 경우 동성(同姓)의 상담자와 상담
-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
- 피해자 조사 시 가급적 외부 성폭력 전문가를 동석시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함
-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되,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음

〈참고인(목격자) 조사〉

- 당사자 간의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필요
- 당사자로부터 사실 확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필요
- 피해 상황 시 목격한 내용을 증언하도록 함

〈가해자 조사〉

- 가해자 처분을 위한 감사 등은 인사권, 감사권, 징계권이 있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수행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성고충상담원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가해교직원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을 실시함
- 가해자 조사 시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통지하고 출석 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
- 가해자가 여러 차례 출석 요청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
-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사실 등을 확정하여 정리한 다음에, 가해자 조사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문답 진행
- 가해자에게 충분한 설명 기회를 제공하고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 진행
- 가해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낮거나 왜곡된 성인식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자가 나서서 가해자를 훈계하는 등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 (가해자의 성인식 개선은 성고충심의위원회 종료 후에 별도의 재발방지교육을 통해서 실시)
-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여부를 따지고 들거나 주변인에게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2차 피해 야기가 확인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림

3)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업무매뉴얼」(교육부, 2022. 3.) 23쪽부터 25쪽 참조

참고

[2차 피해 방지]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
  - 학교장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징계 조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수립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함
  - 학교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함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고충상담원의 책무**
  - **성고충상담원은 피해 측에게 2차 피해 처리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함**
  - 성고충상담원은 피해 측의 평소 품행이나 태도 등을 근거로 비난하거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함
  - 성고충상담원은 피해사실을 무시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됨

〈성고충상담원, 조사자,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2차 피해 행위〉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출처:「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지침 표준안」제6조 제4항 참조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성원의 책무**
  - 구성원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나 평판 등을 소문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구성원,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 행위〉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출처:「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지침 표준안」제8조 참조

3단계: 심의 및 심의 결과 통보

1)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학교장의 지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
-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위원 중 2명 이상 외부 성폭력 관련 전문가로 반드시 위촉해야 함
- 간사 1인을 두되, 고충상담원을 간사로 할 수 있음

Q & A **사안 발생 후 별도 기안(내부 결재)을 통하여 성고충심의위원을 새로 구성해도 되나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 학교마다 내부 규정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와 위촉 기간 등을 정해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을 전부 교체하거나 별도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해당 사안에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위원을 선임하였을지도 모른다는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의위원을 당연직으로 명시하여 임기를 정하여 위촉한 것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통해 특정 위원을 배제하거나 새로운 위원을 충원하거나 외부위원의 수를 늘리는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부 위원의 경우 학기 초에 위원을 정하여 구성하기보다 사안에 따라 적절한 위원을 선임하는 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 구성을 변경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내부 결재를 하고 변경 이유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여성가족부, 2019. 12.)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처리사례집」(교육부, 2020. 12.)

2)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1) 준비단계

- 사실확인 결과보고서에 조사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음
- 교육(지원)청에서 사실확인 시 학교에 확인 내용과 함께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통보해야 함
-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개최 예정을 서면으로 통보함
- 피해·가해교직원에게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일에 출석 가능함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함. 참석하지 않으면 사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함
- 출석안내서 등 관련 서류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A', 'B' 교직원 등으로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학교장 등 관리자가 가해자일 경우 상급 기관에 보고하고,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함
-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검토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시 당사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안내함
- 심의 결과 통보를 위한 주소 등도 명확하게 확인함

(2) 개최단계

- 피해·가해 측의 대기 장소를 분리하여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정족수를 확인해야 함
- 참석자에게 회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함(서약서 작성)
- 위원들의 제척 사유 및 기피·회피 여부 등을 확인함
- 사안 조사 내용, 피해·가해 측 주장과 현재 상태, 특이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함

(3) 심의 단계

- 심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음
- 심의가 끝나고 서약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는 폐회와 동시에 전량 회수

[표 5-7] 성고충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안)

* 세부 절차 및 내용은 부록 문서번호 14 시나리오 참고

단계	처리내용
개회 및 사안보고	• 개회를 알린다. *정족수를 확인한다. • 진행 절차를 설명한다. • 주의 사항을 전달한다. -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하여 설명한다. * 성희롱·성폭력의 해당 여부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함 * 가해교직원에 대한 징계나 인사 조치 권한이 없음을 안내함(단, 학교장에게 임용권이 있는 일부 교직원에 대해서는 교내 인사위원회 등과 통합·연계하여 심의 가능하며, 피해자보호조치 차원에서 학교장의 복무권·업무분장 사항 내에서의 조치는 심의 가능) -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함을 알린다. - 욕설, 폭언, 폭행 등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 됨을 알린다. - 위원들의 제척 사유 및 기피·회피 여부를 확인한다.

단계	처리내용
	- 회의 참석자 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알린다. • 해당 사안에 대해 보고한다.
	↓
피해 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측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말하도록 한다. • 위원회에서 피해 측에 질문하고 피해 측에서 답변한다.
	↓
가해 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 측의 입장을 말하도록 한다. • 위원회에서 가해 측에 질문하고 가해 측에서 답변한다.
	↓
(필요시) 참고인 진술 청취	•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나 해당 학교 교직원 등을 심의위원회에 출석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심의	• 성희롱·성폭력 여부를 심의한다. - 2차 피해를 포함하여 심의함 - 신고된 행위가 여러 개일 경우 행위별로 성립 여부를 확인함 • 피해교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심의한다. •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한다. -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등 학교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3) 피해교직원 조치

[표 5-8]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치

구분	피해교직원
조치사항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부서 전환 4. 그 밖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가해교직원 조치

-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교직원에 대한 조치 결정이 제한적임

  ※ 인사권이 없는 학교의 장에게 징계 등 처분에 대한 사항을 심의·권고할 수 없음

- 가해교직원에 대한 처분은 인사권, 감사권, 징계권이 있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조사 및 감사를 통해 조치함. 단, 학교장에게 임용권이 있는 일부 교직원에 대해서는 교내 관련기구와의 통합·연계를 통해 자체적으로 조사부터 처분까지 가능함

- 학교장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감사관, 인사 담당 부서 등에 통보할 수 있음

  * 단,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상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 해당 기관의 업무 권한에 따라 심의 범위는 조정될 수 있음

5) 심의 결과 통보

-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는 학교장에게 보고
- 학교장은 피해 및 가해 측에 서면으로 심의 결과를 통보
- 조치의 근거와 이유 및 조치결과 등을 기재해야 함
-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 각각 심의 결과를 기재하여 통보
- 결과 통보 시 2차 피해 발생 시 추가 조치할 수 있음을 안내함
- 상급 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에 공문으로 결정을 통보함

4단계: 조치이행

1) 심의 결과 이행 및 결과 보고(성희롱·성폭력)

- 학교장은 심의결과 및 피해교직원의 상태 및 학교 실정,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피·가해교직원과의 공간 분리, 부서 전환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함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함

  ※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이행 결과 보고는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2) 심의 결과 불복 - 불가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므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소송은 불가능함

> "~ 위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인사조치 결정 및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원고(가해교직원)와 피해자를 분리시킨다는 의미의 사전적, 절차적 성격을 갖는 조치로 보일 뿐, 위 조치결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전보조치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구합30734)

- 피해교직원은 위 조치결과와는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함. 당사자 간 합의로 학교 내 사안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5단계: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1) 사안 관리

- 피해교직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행위 교직원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함
- 학교장은 피해·행위 교직원에 대해 조치이행 관리 및 감독을 해야 함
-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만전을 기함

2) 재발방지대책 수립·보고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재발방지대책 보고의 생략은 불가능

  ※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의 교육(지원)청 보고는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 재발방지대책의 내용: 아래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

-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의3)

-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재발방지교육),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3) 심의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조치 이행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재발방지조치를 이행함
- 2차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2차 피해 발생 시 추가 조치를 실시함

참고

[성희롱·성폭력 피해교직원을 위한 '고충심사제도' 안내]

- **고충심사제도의 의의**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교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른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음

  ※ 고충 심사를 위한 고충심사위원회는 단위학교의 성고충심의위원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기구임

• **고충심사제도의 개념**

공무원으로서의 권익을 보장하고 적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주기 위하여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법률적인 쟁송의 절차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사실상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과 개선책을 청구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대법원 87.212.8. 선고 87누658판결)

•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처리)

①공무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⑧고충상담 신청,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공무원고충처리규정)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①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⑧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으로 정한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대상)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 · 조직 · 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이하 "성폭력범죄"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이하 "성희롱"이라 한다)**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조의2(고충처리 절차) ① 고충처리는 고충상담, 고충심사 및 성폭력범죄 · 성희롱 신고 처리로 구분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 등"이라 한다)와 인사혁신처장은 고충상담이나 성폭력범죄 · 성희롱 신고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1. 고충상담: 고충을 제기한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동의
2. **성폭력범죄 · 성희롱 신고: 피해자의 동의**

다 직원[피해]-학생[가해] 사안처리

[표 5-9] 직원[피해]-학생[가해] 사안 주관 위원회

피해 \ 가해	학생
직원	(피해직원) 성고충심의위원회
	(가해학생)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직원[피해] – 학생[가해] 단계별 사안처리 절차

1단계: 신고 및 접수

1) 인지 및 상담

- 피해직원은 전화, 통신, 서면 또는 방문을 통해 교내 성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함
- 피해직원이 교내 성고충상담창구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교육(지원)청에 직접 상담·신고 가능
- 이 외에도 외부 성폭력 상담 전문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

2) 사안 신고서 접수

- 사안처리를 위해서 피해교직원은 신고서(성희롱·성폭력 사안 신고서)를 성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해야 함. 접수 이전의 사안 관련 면담 기록은 상담 기록에 속하며 신고 절차를 대체할 수 없음
- 신고인이 문서를 작성하기 어려울 때는 상담원 참관하에 구술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음

3) 여성가족부 통보(성희롱·성폭력)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 피해직원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지체없이 발생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 성희롱·성폭력 발생의 교육(지원)청 보고는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4) 초기 대응

[분리 조치]

- 피해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직원과 가해학생을 분리함
- 공간이나 동선 분리 등의 물리적인 분리 조치가 필요함

[피해직원 안전조치]

- 피해교원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응급처치나 심리 상담 연계 등의 보호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2단계: 사안 조사(사실확인)

1) 사안 조사(사실확인)

- 피해자가 직원인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성고충상담원이 사실확인을 진행함
-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생활인권업무담당자가 조사하되, 성고충상담원이 필요시 조사 가능
- 학교장은 학교 여건에 따라 2~4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음.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지원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사실확인을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기간의 연장이 가능함
- 사실확인은 진술 및 서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안 발생 현장 확인 및 관련 증거를(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사진, 녹음파일 등) 수집할 수 있음
- 사실확인 시 조사위원회, 사안처리 지원단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음

2) 조사(사실확인) 결과 보고

- 성고충상담원 및 생활인권업무담당자는 조사(사실확인) 종료 후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함

3) 성고충심의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준비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 성고충심의위원회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에게 개최 예정을 서면으로 통보함
- 피해직원에게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일에 출석 가능함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함
  ※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일에 출석 가능함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함
  ※ 피해직원에게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3단계 : 심의 및 조치결정

구분	피해직원 (성고충심의위원회)	가해학생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조치사항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부서 전환 4. 그 밖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1) 조치결정

- 가해학생 조치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
- 피해직원의 조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2) 심의 결과 통보

- 피해 및 가해 측에 서면으로 심의 결과를 통보
- 조치의 근거와 이유 및 조치결과 등을 기재해야 함

4단계: 조치이행

1) 조치결과 이행 및 결과 보고(성희롱·성폭력)

- 학교장은 피해교직원의 상태 및 학교 실정,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피·가해자와의 공간 분리, 부서 전환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함

※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이행 결과 보고는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2) 조치결과 불복

- 피해직원: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행정심판, 소송은 불가능함. 다만, 이와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함
- 가해학생:
  - 퇴학: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사립학교 포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립학교는 민사소송)
  - 그 외조치: 행정심판, 행정소송(다만, 사립학교는 민사소송)

5단계: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1) 재발방지대책 수립·보고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재발방지대책 보고의 생략은 불가능

  ※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의 교육(지원)청 보고는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 재발방지대책의 내용: 아래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

-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의3)

-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재발방지교육),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2) 심의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조치 이행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재발방지조치를 이행함
- 2차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2차 피해 발생 시 추가 조치(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할 수 있음

VI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1.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이해
2.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의 대화 및 지원
3.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의 이해
4. 피해 지원 및 관련 기관 활용의 실제

1.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이해[4)]

- 성 관련 사안 및 범죄 발생 추이에 따르면, 성폭력을 경험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 성폭력 발생 시 가장 우선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신체적, 정서적 개입과 대처, 지원이 중요함. 이때 적절한 대처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며, 어떻게 도움을 청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신속한 안내 및 효과적인 개입이 중요함
- 발생 시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피해자들은 공포와 불안, 우울, 분노, 죄의식, 불편감, 불쾌감, 성적혐오감 등의 후유증으로 시달리며 심리 정서적 후유증,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거나 장기적인 어려움에 놓이기도 함
-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유증

신체적 피해	심리·정서적 피해	대인관계 어려움
- 신체적 손상, 생식기 손상 및 출혈, 임신, 성병 감염 등 신체적 어려움 - 성적 억압 - (자신을 돌보지 않는) 과도한 성행위 또는 위험한 성행동 노출 - 성적 억압	- 우울, 자기혐오, 불안, 공포, 무력감 등 정서장애 - 자기 비난, 죄책감 - 자살 사고 및 시도 - 분노 및 적개심 - 장기적 후유증 (성적 기능상의 문제, 신체적 문제, 사회적응 어려움,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 고립, 소외감 - 낙인 - 타인에 대한 신뢰감 형성의 어려움 - 이성 관계와 부모 관계에 대한 어려움 - 애착 형성의 어려움(불안정) - 사회에 대한 불신
- 2차 피해 및 재피해 : 피해자에 대한 유·무형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난, 소문의 생성 및 전파하는 것을 포함		

4) 출처: 성폭력 피해 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 개발(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9)

•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유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5)]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 (피해를 악화시키는 요인)

- 피해 정도가 심각할수록
- 오랜 기간에 걸친 피해일수록
- 신체 폭력이 병행되어 발생한 경우
- 가족 내에서 피해인 경우
- 피해 경험을 노출하지 않거나 도움을 못 받은 경우
- 가족관계가 부정적인 경우

회복을 돕는 요인 (피해를 완화하는 요인)

- 자아존중감이나 회복탄력성, 내적 통제감이 높을 경우
- 외부 비난 귀인 요소가 적은 경우
- 가족관계(가족응집력)가 우호적인 경우
- 사회적,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이 형성되고 긍정적인 경우
- 주변에 도움(지지)체계가 용이한 경우

5) 출처: 성폭력 피해 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 개발(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9)

2.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의 대화 및 지원

- 피해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도움을 지원하거나 외부 기관 연계를 통해 심리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통합지원, 학습 및 진로 지원 등 다양한 지원과 적용에 대한 내용들이 제시되었으나, 구성 및 적용은 학생의 상황이나 욕구, 각 지역 및 기관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원될 수 있음
- 피해학생 대화 시 대상자의 현재 상태, 피해 유형 및 피해 정도, 특수성, 지원 기간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2-1 피해학생과 대화하기

- 피해학생의 심리적·신체적 안전 확인 및 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대화 진행함
- 교사는 학교(교실)에서 대상 학생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관찰하고 보호, 도움 등을 제공하거나 필요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의료적, 법적 지원을 제공 및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 대화가 중요함
- 피해로 인한 고통에 대하여 충분한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한 피해학생의 용기에 충분한 지지를 보내야 함
- 사안 발생 시 학교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이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보살피고, 평상시 태도 등을 근거로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등의 행위는 주의하여야 함
-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다거나 탓을 하는 등 사건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고, 가해자를 대변하거나 두둔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안의 개입과 해결을 위해 피해학생의 특성(학교급, 피해 유형, 현재 상태)과 학생, 보호자의 욕구에 대해 충분히 탐색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

- 피해 후 고통 정도 및 지속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하고 지속적 관찰과 관심으로 충분한 회복지원을 도와야 함
- 피해학생이 신체적 질병이나 고통을 호소할 때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의료기관이나 성폭력상담소에 연락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들을 안내하도록 함
- 치료와 평가, 사건 수사를 위한 결석, 조퇴 등 출결에 대한 안내 제공과 학업 격차나 손실을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사안에 대한 비밀유지 및 대상자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위하여 독립된 진술 공간을 보장이나 피해 사실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면담 시 피해 사실을 떠올리도록 종용하거나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반복하지 않고 신고자의 의사를 존중해가며 증거물 확보 등을 진행하여야 함
- 피해학생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교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태도에 민감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함
- 피해 정도와 사안에 대한 민감한 내용, 전문적 상담은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도움이 되는 표현
- 정말 힘들었겠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다.
- 언제나 네 편이다.
- 너를 돕는 역할을 하겠다.
- 네 탓이 아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표현
- 왜 그런 곳에 따라갔니? 설마 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했니?
- 너 장난으로 하는 말이지?
- 너에게도 문제가 있어.
-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 말하지 마.

참고

대화 진행 시 유의 사항
- 먼저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인지 살펴보아야 함
- 침착하고 흥분하지 않으며 안정된 말투와 표정 등의 자세를 가져야 함
- 비난하거나 탓을 하는 언행을 하지 않으며,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믿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함
- 피해자는 심리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정서적 안정을 우선으로 배려하여야 함
- 피해 사실에 대해 추궁하듯 반복해서 묻거나 대답을 강요하지 않도록 함
- 신속하게 수사기관, 전문기관을 통한 신고, 의료, 상담 지원, 법률지원을 받도록 요청하여야 함

Tip. 피해학생과의 대화는 신뢰감 형성이 매우 중요함

-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워하고 불쾌감 또는 불편감과 죄의식을 느끼는 경우도 있음
-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서 효과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인간관계나 자아개념 등에 상처를 입는 등 피해가 지속되거나 가중될 수 있음
- 개인 노출에 대한 두려움과 비밀보장에 대해 민감할 수 있으므로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뢰감 형성이 중요함

2-2 피해학생 보호자와 대화하기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기본적인 심리를 이해한 후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함
- 보호자는 분노, 원망, 억울, 미안함, 죄책감, 놀람, 당황 등의 복합적인 감정과 심리·정서적 반응을 보일 수 있음. 이때 교사나 업무담당자는 보호자의 이런 감정과 반응에 대해 우선으로 공감, 지지를 표현함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도움 됨

참고

보호자 대화 시 유의 사항

- 자녀의 사안으로 내교 및 면담을 요청하는 보호자의 힘듦을 이해하고 상처와 고통에 대한 지지·공감을 하도록 함
- 보호자와 자녀의 평소 관계를 바탕으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사안과 관련된 정보 및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는 학생(자녀)이므로 수사나 사안처리 과정, 어른들의 감정싸움으로 인해 자녀의 치유나 회복이 간과되지 않도록 함께 안내하는 것이 중요함
- 자녀의 회복 및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심리·정서적 안정이 중요함을 알리고 학교나 주변 자원과 협력, 전문기관 연계 등에 대한 안내와 조력
- 보호자의 특성 및 상태를 파악하여 현재 자원과 특성 등에 따라 개입 목표나 순서 등의 전략을 고려하여 접근함

3.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의 이해

1) 피해 지원을 위한 단계별 지원 제도 안내

■ 사안 인지 및 상담 과정 유의 사항

-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 보호

주요 내용	- 피해자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인지할 경우 비밀유지 엄수 - 업무담당자는 피해자 정보 및 성폭력과 관련한 모든 사실을 비밀유지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 및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됨 - 법령 위반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상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 상담소·보호시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수집 또는 제공할 수 없음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비밀엄수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78조(징계사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금지) - 개인정보 보호법

참고

상담소·보호시설의 상담자료 보관 기간

- 상담일지는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 조치하되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강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전 연령 대상 강간살인죄 등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 피해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피해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자료 폐기 가능
- 상담소·보호시설이 폐쇄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폐쇄되는 상담서류 일체를 당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송토록 조치하고 5년 동안 보관 후 폐기 조치

■ 신고 접수 과정 피해자 지원

•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주요 내용	-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폭력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예방 - 집단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 - 가해자가 협박하거나 소문을 내는 경우 2차 가해로 추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관련 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제18조(2차 피해 방지) -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정의), 제4조(기관장의 책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 범죄피해자 보호규칙 제12조(제2차 피해의 방지)

• 피해자 보호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신청

주요 내용	피해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관련하여 2차 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긴급 보호 조치	
	학교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함 - 피해학생이 긴급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가능
	경찰	- 가해자의 협박·위협이 염려되거나 피해가 있었던 경우 수사기관·법원에 신변안전 조치 신청 가능 -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도 해당 - 일시적인 신변경호나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 등 지원 -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들도 신변보호조치 신청 가능
신청	경찰, 검찰	- 각 경찰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2조(신변안전조치) -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범위),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8조(신변보호의 대상), 제29조(조치 유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피해자보호명령 등)	

• 인터넷 피해 구제제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대상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성 게시글, 댓글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 피해자
주요 내용	- (명예훼손 분쟁조정)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게시한 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의 청구 - (권리침해정보 심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모욕 또는 초상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인격권)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 요구 ※ 성(性) 관련 불법 촬영 정보 및 성(性) 관련 초상권 침해 정보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에서 전담 처리 - 권리침해 상시 상담 접수
신청	- 국번 없이 1377, 홈페이지(http://remedy.kocsc.or.kr) 상담
관련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5

■ 성폭력 피해자 대상 수사 과정에서의 지원 제도

• 국선변호인 무료 지원 제도

주요 내용	-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과정에 함께 출석, 공판절차 참여하여 의견진술 등 지정받은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전문적인 법률지원
신청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 신고·조사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 및 보호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신청 -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피해자가 변호사 지정하여 선임 불가
관련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 서울시) http://crisis-center.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번호+132)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피해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9조(변호사 선임의 특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피해 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

대상	- 13세 미만·장애인의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이 법률상 의무 참석 - (19세 미만·장애인) 피해자 등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거부해도 이후 재판 단계에서의 효과 등을 적극 검토하여 수사기관과 신중한 협의에 따름	
주요 내용	- 수사기관·법정 증언 과정에서 피해자의 불안과 긴장으로부터 원활한 의사 소통·진술을 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인이 함께 동석하는 제도 - 단, 사안의 가해자로 가족, 친족이 추정 또는 확인되는 경우 경찰·검찰·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신뢰관계인으로 참석 불가	
	신뢰관계인	- 피해자의 가족 또는 변호사 -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 라포가 형성된 관계자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1조(신뢰관계자의 동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및 제221조	

• 가명조서 신청 제도

대상	-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 규정된 범죄의 신고자 또는 피해자
주요 내용	- 진술·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변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조서·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제도
신청	- 형사절차 과정(경찰·검찰 조사) 에서 가명조서 작성 안내 · 신청
관련 법령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0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3조(인적사항 기재 생략) -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 피해자 진술 녹화 제도

대상	- 19세 미만 또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인은 반드시 촬영·보존
주요 내용	-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부터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모든 진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보존 - 피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녹화내용에 불포함 - 영상녹화 시에 피해자 등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받고 진행 ※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 녹화 거부 의사는 불수용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3조(영상녹화의 방법), 제24조(영상녹화 시 유의사항) 제25조(속기사의 참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 진술조력인의 참여 지원 제도

대상	- 13세 미만 또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인	
주요 내용	- 아동·장애인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직권이나 피해자·그 법정 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수사·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중개·보조하여 진술 조력 - 피해자 조사 전에 피해자·법정 대리인·변호사에게 진술 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 면담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해 진술조력인의 증인 신문 참여 가능	
	진술조력인	-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제38조(진술조력인의 의무)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8조 *진술조력인의 참여)	

• 피해진술 속기사 참여 지원(속기사 참여)

주요 내용	-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영상 녹화 시에 진술 녹화실 외부에 마련된 특정 장소에서 진술 발언에 대한 속기록 작성 - 영상녹화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아 영상물에 대한 사후 속기록 작성 - 경찰은 진술 후, 속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방법으로 진술자로 하여금 속기록을 확인하게 하고, 진술자가 이의가 없을 때에 속기록 말미에 기명날인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5조(속기사의 참여) 제26조(속기록의 작성)

■ 의료지원 제도

• 진료비용 지원

주요내용		- 피해 발생 후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병원 진료·간병비 지원 - 건강보험공단의 진료 내역통보 제외 대상인 특수상병군 적용 강화 - 의료지원 기간 2년 초과 시, 의료지원 기관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당해 지자체 (시·도, 시, 군, 구) 협의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 결정
	진료비	- 내·외과적 손상을 입어 성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단순한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지원 제외 - 예방적 치료(피부과, 비뇨기과 등)비 지원 건강보험 적용 원칙
	입원비	- 입원실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기준병상 사용을 원칙
	약제비	- 긴급하게 구입한 약품비 지원 ※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값은 미지원
	진단서 발급비	- 일반진단서 비용만 지원, 개인보험과 관련 지원 불가 - 진단서의 제출처는 학교·직장·수사기관·법원으로 제한
신청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이용 시 지원 신청·문의 - 개인이 우선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소급 지급을 위해서는 필요한 영수증 외 진단서·진료확인서 등이 필요하므로, 해바라기센터·성폭력상담소에 자세한 문의·상담 필요

• 성폭력으로 인한 인공 임신 중절·출산 지원

주요 내용		-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평가,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또는 출산,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 지원(비급여 심리치료 제외) - 낙태로 인한 부검 및 화장 비용 지원 가능 - 아동·청소년 대상 인공 임신 중절·출산은 의사의 진료 소견에 따름 - 인공 임신중절·출산은 피해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염두에 두어 진료 의사 소견과 피해자 본인의 협의에 따르며 절차 단계별 동의를 요함
	임신 중절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 임신중절은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경우만 가능, 그 밖의 경우 지원 불가 (모자보건법 제14조) - 정신 장애인으로 성폭력 피해사실 소명에 구체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적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호에 의한 인공 임신중절 및 의료비 지원 가능 ※ 본인·배우자가 우생·유전학적(대통령령 지정) 정신장애,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에 자세한 사항 문의·신청

• 돌봄비용 지원

주요 내용	- 피해 아동·장애인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보호자의 돌봄 공백 지원 - 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비용 분에 대해 지원 ※ 민간베이비시터,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아 양육지원, 활동보조인 등
대상	-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성인 성폭력 피해자의 13세 미만 자녀 - 13세 미만 피해 아동의 13세 미만 형제·자매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로 가족 돌봄 받기 어려운 경우
신청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에 자세한 사항 문의·신청

• 간병비 지원

주요 내용	- 성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병원 간병비 자부담 비용 지원 - 1인당 최대 1개월, 최대 300만 원 이내 지원 가능
대상	- 성폭력 피해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면서 가족으로부터 간병 지원을 받기 어려운 자
신청	-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성폭력 내담자에게 간병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안내

4.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원 기관 안내

1)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 안내

- 해바라기센터 : 아동형, 위기지원형, 통합형 등 3개 유형 운영 체계

대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기능	- 피해자 및 보호자 상담, 의료, 법률·수사, 심리치료 등 통합 서비스 제공	
	수사·법률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피해자 진술서 작성, 진술녹화 실시, 무료 법률지원사업, 국선변호사 연계 등 지원
	의료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조치,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응급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 전문의 진료, 진단서 발급 등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심리상담 직접 지원 또는 외부 기관 연계
	상담	피해자 및 가족 상담,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기관 연계
운영	- 아동형(9시~18시, 월~금요일), 위기지원형, 통합형(365일 24시간),	
문의	- 전국 해바라기센터 기능별 연락처 참조	

분류	지원 대상	이용 시간	공통사항	기능별 지원내용
① 아동형	19세 미만 아동 · 청소년, 지적장애인 (연령 구분 X)	월~금 9:00~18:00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대상 상담·의료·법률 서비스 지원	상담·의료·심리·법률 서비스 등 사례관리
② 위기지원형	연령 구분 없이 피해자 이용 지원	365일 24시간 * 통합형 내 아동형 9시~18시 운영		수사·의료·법률·상담 서비스
③ 통합형 (①+②)				통합지원 (①+②)

• 여성의 전화 1366

대상	- 성희롱 · 성폭력 · 디지털 성폭력 · 데이트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피해자
기능	- 사건 발생 후 위기 개입을 위한 긴급한 구조·수사기관·상담·의료·보호시설·법률구조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연계 **(긴급피난처 운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동반 자녀 임시 보호
운영	- 24시간 365일 무휴
문의	전국 지역번호 + 여성긴급전화 1366

• 지역 성폭력상담소

대상	-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 피해자
기능	- 피해자의 의료기관 이용 연계·의료비용 지원, 법률지원, 사법 처리 절차 관련 지원, 수사기관 조사·법원 증인 신문 등에 동행
운영	- 9시~18시, 월~금요일
문의	- 전국 지역 성폭력상담소 연락처 참조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상	성폭력 피해자
기능	- 피해자의 심리상담,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 무료법률지원(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운영	10시~17시, 월~금요일
문의	02-883-9284 / http://www.crisis-center.or.kr/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운영, 24시간 상담 지원)

대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기능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불법 촬영물 삭제·유포 현황 모니터링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연계 등 지원, 센터는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로 삭제 및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	
	삭제지원 신청	- 피해자 및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 가능 ※ 삭제지원 요청 시 피해자는 신청서류, 신분증 사본 등 제출
	지원연계	- 피해 내용과 연계 의뢰서 작성 제출 (다음 중 1가지 이상 구비) ※ 다운로드 받거나 유포된 피해 촬영물, 게시물 링크 주소(URL), 유포물 화면 캡처본, 유포 게시물 제목 및 검색키워드 등
운영	- 24시간, 365일	
문의	- 전화상담 및 온라인 게시판으로 상담 신청(02-735-8994, https://d4u.stop.or.kr)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공개시설)

대상	- 성폭력 피해자 · 피해자 가족 구성원
기능	- 피해자·피해자 가족 구성원의 시설 내 보호(숙식 제공), 자립 자활 교육, 취업 정보의 제공, 의료기관 이용 연계, 상담 지원(사례관리), 법률지원, 수사기관 조사·법원 증인 신문에 동행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 지원, 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 지원
운영	- 24시간 365일 무휴
문의	- 전화번호 비공개시설, 해바라기센터·성폭력상담소에 이용 문의

시설유형	대상 및 입소(추가연장)기간
일반	- 일반인 피해자 대상 - 1년 이내 / 1년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장애인	- 2년 이내 /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1회당 2년 이내) - 장애인 피해자에게 보호, 숙식, 심리상담 등 제공
특별지원	- 19세 미만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호, 숙식, 심리상담 등 제공 - 초·중·고·대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각종 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 (입학확정자 포함) - 19세가 될 때까지 /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외국인	- 외국인 성폭력피해자 대상 - 1년 이내 / 1년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자립지원공동생활 시설 (장애인 포함)	- 일반·장애인 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자활 교육, 취업 정보 등 제공 - 2년 이내 / 입소자가 취업 및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이수 중인 경우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대상	- 강력범죄(살인, 성폭력, 방화, 강도, 폭행), 디지털 성범죄, 과실치사상 수사상 또는 법적으로 입증된 피해자
기능	- 피해자 지원은 해당 센터 또는 검찰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피해 정도 등을 검토하여 지원됨 - 지원요청 시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심의 대상으로 선정 가능 〈구비서류〉 - 피해자 증명 문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 공소장, 판결문 등 - 피해자 본인일 경우 : 본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일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관계 증명확인서 등 - 지원신청서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신청서, 반환확인서, 간병확인서, 돌봄서비스 이용 확인서 등

	심리지원	긴급구호상담, 스마일센터 연계 기관 협력을 통한 심리치료 지원
	법률지원	법정 동행, 재판 모니터링, 법률 자문 지원
	주거지원	LH 주거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스마일센터 임시거주 연계
	경제지원	치료비 및 심리치료비 실비, 긴급생계비, 간병비 및 ·돌봄비, 취업지원비, 학자금, 장례비
	검찰청 범죄피해구조금 연계 : 사망·장해·중상해(2개월 이상) 시	
운영	- 9시~18시, 월~금요일,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방문 상담 신청 예약	
문의	- 국번 없이 1577-1295 - (방문 상담 및 제출 신청)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화번호 참조	

- 스마일센터

대상	- 강력범죄 피해자 및 가족 (살인, 성폭력, 방화, 강도, 폭행 등)
기능	- 피해자 및 보호자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심리 평가·치료, 법률지원, 임시 보호 (센터 내 생활관 입소)
운영	- (전화접수 및 상담) 24시간 (등록 면담, 심리치료) 9시~18시, 월~금요일
문의	- 국번 없이 1577-1295

- 인터넷 피해 구제신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성 게시글, 댓글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 피해자	
주요 내용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모욕 또는 초상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 (인격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 요구 - 정보통신망으로 유통 중인 타인의 권리침해 정보 관련된 분쟁조정(심의) ※ 성(性) 관련 불법 촬영 정보 및 성(性) 관련 초상권 침해 정보는 디지털 성범죄 심의지원단 전담 처리 - 국내·외 사업자에게 신속한 시정 요구(삭제, 접속차단) 및 자율규제 요청 〈심의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성적 불법촬영정보, 허위영상정보, 피해자 관련 신상정보,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불법촬영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에 준하는 불법·유해 영상물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로 심의 및 시정 요구 ※ 디지털 성범죄 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불법정보(성적인 정보, 권리침해 정보 등)는 소관 부서로 이관될 수 있음	
	통신민원	- 개인·사회,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로, 불법·청소년 유해 정보 신고·접수 및 처리, 인터넷상의 각종 피해 상담 안내

<table>
<tr><td rowspan="3"></td><td></td><td colspan="2">-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범죄 관련 정보 등
- 신고 시 다음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신고 처리 가능
※ 개인정보(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등), 신고주소·제목·내용·증거 자료</td></tr>
<tr><td rowspan="2">인터넷 피해 구제</td><td>명예훼손 분쟁조정</td><td>-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의 사람들에게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초상권 침해 정보 등
※ 인터넷 악성 게시글·댓글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인격권)침해 정보</td></tr>
<tr><td>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td><td>- 권리침해 정보를 게시한 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td></tr>
<tr><td>신청</td><td colspan="3">- 국번 없이 1377(연중 24시간), 홈페이지(http://remedy.kocsc.or.kr)
-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상담은, 전화 1377 및 비공개 상담 챗봇 이용
※ 카카오톡 채널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정보신고상담톡' https://pf.kakao.com/_qxltUxb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신청요건 확인 후 접수되며, 필요시에 추가자료 제출</td></tr>
<tr><td>관련 법령</td><td colspan="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8조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5조의2, 제36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5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시행령 제30조의 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1-15호(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td></tr>
</table>

• 불법촬영물·청소년 유해 정보 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대상	- 불법촬영물 등에 의한 피해자, 불법촬영물 등의 목격자
주요 내용	- 불법촬영물 등에 의해 피해를 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관련 기관·단체를 통해 각종 포털, 인터넷방송, 웹하드 업체 등에 신고 및 삭제요청, 각종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 및 삭제요청 대행
신청	-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 요청 기관·단체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센터 참조(https://kcc.go.kr)
관련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업무의 위탁)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1-15호(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2) 교육기관 (학교 및 교육청)

- 교육지원청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및 관리
  -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 인권 보호 및 외부 전문기관 연계

유형	지원내용
위(Wee)센터	교육(지원)청 단위 운영.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단위학교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료 지원
가정형 위(Wee)센터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한 위탁 교육기관
병원형 위(Wee)센터	고위기 학생 대상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치료, 대안교육과정 운영, 전문 상담 및 심리검사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위(Wee)닥터	학교 현장에서 심리·정서적 문제 상황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청, 학교 소속 전문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원격 화상 자문 지원

- 학교
  - 피해학생 일상 관찰 및 보호 지원
  - 위(Wee) 클래스 등 피해학생 안전 및 보호 지원, 사후 관리
  - 학적 관련 처리 지원

유형	지원내용
위(Wee) 클래스	단위 학교에서 운영.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및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상담 및 심리 치유, 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

3) 경찰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

- 피해자 전담 경찰관

- 전국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배치되어 주요 강력범죄 발생 초기 위기 개입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경찰관으로서 피해자의 조력자 역할

-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 위기개입·지원·대응팀)

- 심리학 전공자 및 관련 분야 경력 경찰관으로, 각 시·도 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배치되어 강력범죄 발생 초기 피해자 전문심리평가 및 상담, 심리적 응급처치 실시로 피해자 안정 지원

4) 법률지원

기관	역할
한국성폭력 위기센터	- 무료법률지원 :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무료법률지원사업 운영 - 02-883-9285 / crisis119@hanmail.net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	- 피해자·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 안내 - 요청 시 지방검찰청에 신청
진술조력인 지원 제도	- 피해자가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통해 조사 시 의사소통 중개·보조(13세 미만·장애인 피해자 조사 시 의무적 고지)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법률상담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관련 지원

5)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기관	역할
광역/지역 전담 의료기관	- 신체적 정신적 외상 치료 및 검사 - 신속 의료지원 및 판단(소견서/진단서)
일시보호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 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 가능성이 커 응급, 즉각 분리 조치 시 현재 생활 중인 가정의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18세 미만 피해 대상 지원 - 보호 및 숙식 제공 등 생활, 교육, 정서 지원, 심리검사,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 치료 지원 등
아동양육시설/그룹홈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 취업 훈련, 자립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청소년쉼터	- 가출 및 위기 상황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관련 지원 - 자살 예방,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및 중증 정신질환 관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교육·상담, 한국어교육,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 통역·번역 지원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 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지역사회 내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운영, 청소년 및 부모 상담, 심리검사,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소 운영 등
종합사회복지관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사업(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및 자활사업 등) 실시
지역아동센터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교육, 놀이, 지역사회 연계 등 복지서비스 제공

Tip) 〈여성·가족·청소년·권익 지원시설 정보〉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찾아 피해자 주변의 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음
(http://www.mogef.go.kr/inc/fs_fsc_s003.do?mid=fsc300&facCd=msa005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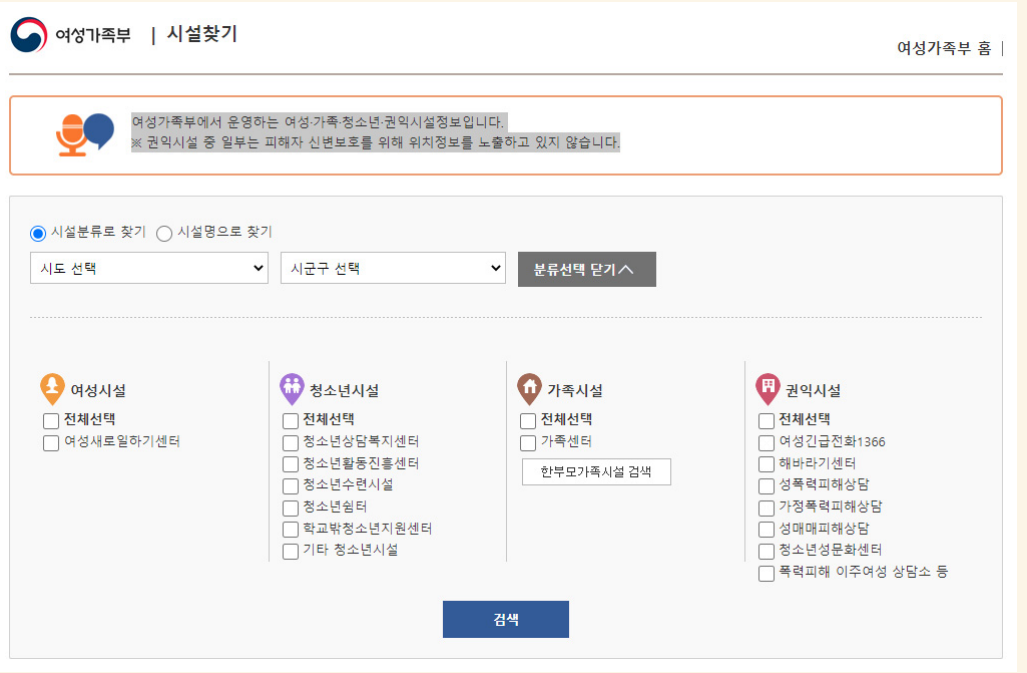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정책정보〉인권보호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정책자료실〉주제별 정책자료〉인권보호,(22.6.3.)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

VII 부록

[001]

상담일지

상담일	20 . . .		사례번호		
내담자		회차	회	상담자	
상담방법	① 방문 ② 전화 ③ 인터넷 ④ 기타				
상담내용					
* 피해자 주 호소 내용(육하원칙에 맞춰서) * 요청 사항 등					
* 내담자가 학부모 외 제3자, 대리인일 경우 관계 제시					
차기 상담일시 : 년 월 일 (요일) 시					

[002]

접수번호	
담당자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서

당사자	신청인	성명(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주소			
		E-mail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가해자)	성명(성별)		소속(학교)	
				직급(학년)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육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필요한 보호조치					
여성가족부 발생사실 통보	동의(　　)　　부동의(　　)				

위 신청인은 OO 사건의 신고 접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OO 귀하

[003]

민감정보처리 동의서(신고인)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민감정보 처리목적] 신고사건 처리

[민감정보 처리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처리자는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고유식별정보 및 사상, 신념,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나,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한다.

[민감정보 내용] 신고사건 내용 및 신상정보
[민감정보 처리의뢰부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고충상담원

위 사항에 대해 고충상담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004]

전문기관 연계 의뢰서

작성일 : 20 . . . (요일)				
의뢰기관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연계 기관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접수정보	일자	20 . . . ( )	경로	전화/게시판/내방 등
피해자 정보	이름(성별)	( )	나이	
	소속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가해자 정보	이름(성별)	( )	나이	
	소속		직위	
피해내용 (복수선택)	☐ 강간/유사강간/준강간 ☐ 성추행 ☐ 언어적 성희롱 ☐ 2차 피해(관련자 회유, 협박/고용상 불이익/소문 등) ☐ 성차별 ☐ 문자/영상 등 ☐ 기타( )			
사건 내용	(기본정보) (주요 피해) (사건 직후 조치) (피해자 현재 상황) (피해자 요구사항) (상담원 조치사항) (향후 진행방향)			
의뢰 요청사항				
비고				

[005]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담당자(직급)	000 부장
연락처	000-000-0000
통보일시	년 월 일

□ 사건 개요

발생일	*년 월 일*	**사건접수일 (인지시점)**	*년 월 일*	**사건 유형**	*1:1/多:1/1:多/ 불특정다수*
사건 발생기관명	*000학교 / 00도 00구청*		**기관유형**	*국가기관 / 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 대학교 / 각급학교*	
행위자 - 피해자 관계	*상급자-하급자/ 하급자-상급자/동료/사제/ 기타/확인불가 등*		**행위자 - 피해자 성별**	*남성 - 남성*	
				남성 - 여성	
				여성 - 남성	
				여성 - 여성	
				확인 불가	
특이사항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에 의한 사건인가*				
	피해자가 다수인가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기관 신고 여부(신고시 신고일)				
보호조치 사항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원하는지 여부*			*예□ 아니요□*	
	행위자와 분리 여부 (예시) 행위자 업무 공간 이동, 행위자 전보, 피해자 휴가 등			*예□ 아니요□ 조치예정□*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 여부 (예시) 심리상담, 의료지원, 외부기관 연계			*예□ 아니요□ 조치예정□*	
주요내용 (사건 신고·접수 개요 등)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 처리 가능

□ 기타

[006]

출석 통지서

문서번호 : 문서 발송 번호 기재
수신대상 : 관련인 성명, 소속, 주소 등 기재

사건번호				
대상자 **(참고인, 신고인, 피신고인)**	성명		소속	
신고사유	** 참고인에게는 생략*			
의견진술을 요하는 사항				
근거				

1. 위 사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2. 사건의 공정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나. 출석장소:
3.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필히 사전 고지를 한 후, 가능한 일시 및 장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4.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신고인의 진술 및 자기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5.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진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조사위원회 *※예시*

문의할 곳	Tel.		E-mail	

[007]

서면 진술서

관련자	소속학교	학년 반(소속부서)	성명	(보호자성명)

상기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교의 사실확인에 참석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대신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성고충 사안에 대한 의견	
요구 사항	
기타 사항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 ○○○조사위원회 귀중 *※예시*

[008]

비밀유지 서약서(조사자)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본인은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 위원(사안처리 지원단)으로서
20　년　　월　　일에 신고된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신고건에 관하여
「OO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OO조에 의거하여
사건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009]

사실확인 문답서(피신고인)

일시 :
장소 :

1) 이름, 소속
〈답〉

2) 피신고인은 OOOO년 O월 O일 (장소) OO에 참가한 사실이 있나요?
〈답〉

3) 피신고인은 이 OO자리에서 신고인에게 ~한(자세한 사건 내용)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 이때 사건내용을 자세히 먼저 묻기보다는, 간략하게 말하게 하고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그 때 OO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답〉

5) 이 사건에 대하여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답〉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열람, 낭독)하게 한 바, 진술내용과 상이 없으며 오기나 증감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확인(조사) 시간, 문답서 열람 시간

피신고인 : (서명)
확인자(조사자) : (서명)

[010]

사실확인 결과 보고서

<table>
<tr><td>1</td><td colspan="2">접수일자</td><td colspan="2">20 년 월 일</td><td>담당자</td><td></td></tr>
<tr><td rowspan="2">2</td><td rowspan="2">피해자</td><td>성명</td><td colspan="2"></td><td>성별</td><td></td></tr>
<tr><td>직급</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2">3</td><td rowspan="2">행위자</td><td>성명</td><td colspan="2"></td><td>성별</td><td></td></tr>
<tr><td>직급</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2">4</td><td colspan="2" rowspan="2">긴급조치여부</td><td>피해자</td><td colspan="3"></td></tr>
<tr><td>행위자</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4">5</td><td colspan="2" rowspan="4">사안내용</td><td>누가</td><td colspan="3"></td></tr>
<tr><td>언제</td><td colspan="3"></td></tr>
<tr><td>어디서</td><td colspan="3"></td></tr>
<tr><td>무엇을/어떻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6</td><td colspan="2" rowspan="2">현재상황</td><td>피해측</td><td colspan="3"></td></tr>
<tr><td>가해측</td><td colspan="3"></td></tr>
<tr><td>7</td><td colspan="2">사안진행 및
조치사항</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7">※ 조사자 의견을 첨부할 수 있음</td></tr>
</table>

[011]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촉(임명)장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위촉(임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 사람을 「OO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OO조에 의거하여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인)

[012]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OO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OO조에 의거하여
제OO회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년 월 일 시
2. 장소:
3. 안건:
4. 사안개요(사안 번호, 사안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 사안 심의가 있을 경우에만 사안개요 기재
* 심의대상 사안이 수 개일 경우 모두 기재

년 월 일

성고충심의위원회위원장 (인)

참고사항

1. 문의사항이 있으면 업무담당자(전화: OOO-OOOO)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하실 때는 이 통지서, 신분증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회의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첨부한 서면 진술의견서(별지 양식)을 작성하여 OO학교로 심의위원회 회의 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3]

성고충심의위원회위원 위촉 동의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

성명			소속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E-mail			
위촉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비고	외부 전문가 위원( ), 내부위원( )			

상기 본인은 OO 학교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OO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OO조에 의거하여
사건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OO 학교장 귀하

[014]

성고충심의위원 기피 신청서

신청인	소속학교	직급/ 학년·반	성명	(학생인 경우) 보호자 성명
	주소			
신청내용	기피대상자			
	신청이유			

「OO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OO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서명 또는 인)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귀중

[참고] 해당 양식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활용함

[015]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20 학년도 제 회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 사안 번호:

1. 일 시 : 년 월 일(요일) 시 분
2. 장 소 :
3. 참석자 : 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간 사 ○○○
교 사 ○○○ 학 생 ○○○
학부모 ○○○
학부모 ○○○

4. 회 순
1) 개회
2) 심의위원회 개요안내 - 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 참석자 소개
3) 사안보고
4) 피해 측 확인 및 질의응답
5) 가해 측 확인 및 질의응답
6) 성희롱·성폭력 성립여부 및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7) 폐회

5. 상정 안건
- ○○○의 사안 -
사안개요

6. 회의 내용(발언 요지)
○○○ 학생
○○○ 학부모
○○○ 교사
○○○ 위원
○○○ 위원

7.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피해자	결정사항	표결내용
○○○	“~” 발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성립 여부	만장일치

구분	결정사항		표결내용
피해자 보호조치	심리상담 연계		
재발방지대책	전수조사 (실태조사) 실시	예방교육 내 디지털 성범죄 내용 포함 및 성희롱 성차별 발언에 대한 내용 포함	
	상담창구 접근성 강화		

작성자 : (인)

성고충심의위원회위원장 (인)

[016]

성고충심의위원회 시나리오

1. 개회 및 안내

절차	세부진행발언	특이사항
정족수 확인 개회 알림	(위원장) 간사는 성원을 보고해주세요. (간 사) 재적위원 7명 중 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OO 교육청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에 의거, OOOO학교 성희롱 예방지침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0000학년도 제0회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1타]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되 회의 종료 시까지 성원 유지
위원장 인사	(위원장)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는 OO 학교 성 고충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의 운영 목적과 규정에 의거 충분히 협의하셔서, 성희롱 사안에 대한 심의와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 등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역할 및 기능	(간 사) 성고충심의위원회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A 학교 사실확인 결과보고서] 1p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성고충심의위원회는 OOO를 위원장으로 총 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부 전문위원 2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있습니다. -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에 관해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희롱·성폭력 여부(2차 피해 포함) 판단, 둘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셋째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포함)에 관한 사항 등 -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신고인)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하고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계획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 위원님들께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건의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신고인에게는 고충사건 처리 후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위원장) 간사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의 운영 목적과 규정에 의거 충분히 협의하셔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상정	(위원장) 오늘 심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위가 있는 교사 3인의 성희롱에 대한 심의와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안건입니다.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제척, 기피, 회피 안내 (필요시)	(위원장)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의 제척, 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의에서 제척되며, 관련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이 있을 때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위원이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사와 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시거나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피 시 위원 정족수 등 성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의하고, 제척, 회피, 기피 해당자는 회의에서 제외함
주의 사항 전달	(위원장)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전달합니다. 첫째, 심의위원회는 사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심의위원들은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정하고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은 각각의 성희롱·성폭력 사안들이 매우 복잡하고 개별적인 양상을 띤다는 점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건의 본질과 상황을 이해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다른 사례와 단순히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신고인·피신고인과 관련된 자료는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는 등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자·가해자 및 신고자와 참고인과 관련된 자료 누설 금지 등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사안 보고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고충처리기구 사안 보고	(위원장) 다음은 사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은 사안 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는 사안의 경과 및 사안의 내용, 사실확인 결과보고서, 확인서 등 심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조치 결정을 위해 관련자에게 추가로 확인할 사항에 대해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 사안 보고 ▶ 사안 번호 20 OO-OO 건의 경과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기구 사실확인 결과보고서를 정리하여 보고) ▶ 20 OO. OO. OO. 성희롱 신고 사안 접수하여, ~~~ * 확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 (사안 개요, 진행 상황, 중점 심사 사항 등) ☞ 기초 사실 및 다툼 없는 사실(A, 및 B가 모두 인정한 사실)은 ~ 이며, ☞ A 및 B의 상반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측 주장 및 목격자 진술은 ~입니다. - B 측 주장 및 목격자 진술은 ~입니다. ☞ 기타 진단서, 문자 내용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요약 보고(외부 조사위원이 보고할 수 있음)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한 파악을 위해 [사실확인 결과보고서]를 숙지할 시간을 10분 정도 갖겠습니다. [10분 후]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 심사 자료 등 관련 자료 중에서 궁금한 사항은 (간사)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쟁점 사안과 관련 학생·보호자 질의응답 시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요 쟁점과 논의사항 협의) (위원장) 주요 쟁점 사안은(　　)으로 요약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자 질의응답 시에 심도 있는 질문과 논의로 해당 내용에 관해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 피해자 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질의응답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위원과 피해자 측 질의응답 및 관련자와의 관계(보호자 여부) 확인	(위원장) 먼저 피해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은 피해 관련자를 입장시켜 주세요. (위원장) 본 사안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하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피 신청과 유의 사항 안내	(위원장)(간사) 먼저, 법령의 절차에 따라 기피 신청 및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기피 신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으로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하면 퇴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심의위원회에 참가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피 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사안 설명 및 사실 여부 확인	(위원장) 다음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내용을 잘 듣고 이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 사) 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 진술) (위원장) 위원님께서는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는 위원들의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을 요청해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우신 내용은 대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취조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
피해자 입장 표명 및 요구사항 진술	(위원장) 마지막으로 입장이나 요구사항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자 혹은 보호자 진술)이상으로 피해 관련 측의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을 마칩니다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사후 과정 안내	(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OOO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드리겠습니다. 이후의 절차나 궁금하신 내용은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피해 관련 측의 귀가 안내 시간이 길어지면 정회 가능

4. 가해자 측 사실확인 · 의견진술 · 질의응답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위원과 가해자 질의응답	(위원장) 다음은 가해자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가해자를 입장시켜 주세요.	가해 측 회의 장소 입장
기피 신청과 유의 사항 안내	(위원장)(간사) 먼저, 절차에 따라 기피 신청 및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기피 신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으로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하면 퇴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심의위원회에 참가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와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신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피 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사안 설명 및 사실 여부 확인	(위원장) 다음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해자께서도 관련 내용을 잘 듣고 이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 사) 사실확인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OOO는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님께서는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OOO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을 요청해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우신 내용은 대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 - 행위 사실 확인(특히, 피해 관련 측 주장과 다른 경우 사실관계 확인)	취조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행위 관련 측 입장 표명 및 요구사항 진술	(위원장) 마지막으로 입장이나 요구사항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해자 진술) 이상으로 가해 관련 측의 사실 확인 및 의견진술을 마칩니다	
사후 과정 안내	(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OOO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드리겠습니다. 이후의 절차와 궁금하신 내용은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OOO는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가해자 측의 귀가 안내

5. 참고인 진술(필요시)

* 조치 결정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권한으로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위원과 참고인 질의응답	(위원장) 다음은 참고인 진술이 있겠습니다. 간사는 참고인을 입실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인과의 질의 응답) (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별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이 없는 경우] (간 사) 이 사안에 대한 참고인으로 OOO와 OOO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두명 모두 오늘 이 자리 참석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A학교 사실확인 결과 보고서 1p]으로 이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상으로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에 대한 진술 및 사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사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이 많은 경우 순차적으로 입장

6. 성희롱·성폭력 여부 심의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위원과 가해자 측 질의응답 및 피해 측 의견진술	(위원장) 먼저 성희롱·성폭력 사안 해당 여부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안별로 자유로이 토론 후 기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를 기표하여 해당 여부를 결정짓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OOO 교사의 사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들 간 성희롱·성폭력 여부 논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 20 OO-01건에 OOO 교사에 대해 심의한 결과 OOO 교사가 OOO 교사에게 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 20 OO-0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OOO 교사에 대해 심의한 결과 OOO 교사가 OOO 교사에게 한 행위는 신체 및 정신상 피해를 유발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 종료

7.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대책 등 논의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피해자 보호조치 의결	(위원장) 피해자 보호 조치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피해자 및 신고인 보호조치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 사) 피해자 및 신고인 보호조치에는 ******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다음은 피해자 OOO의 보호조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들 간 상호 논의) (위원장) OOO의 보호조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OO 조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제 조치를 의결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발방지대책 등 심의	(위원장) 다음으로는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방지대책에는 관련 기관(여성가족부, 교육청 등) 컨설팅 신청, 2차 가해 혹은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가해자 선도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가해자 교육 OO 시간을 이수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들 간 협의)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017]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서

1. 사안 번호: 2023-1호

2. 관련자 : A 학교
   - 신고인 : B
   - 피신고인 : D
   - 참고인 : E

3. 결정 사항
   - 성희롱·성폭력 여부: *성희롱에 해당함*
   - 2차 피해 여부: *해당 사항 없음*
   - 피해자 보호조치: *심리상담 연계(교내 상담센터)*
   - 재발방지대책: *피신고인에 대한 10시간 재발방지교육 이수*
     전 교직원 대상 2시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이 사안에 대하여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23년 월 일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018]

심의결과 통보서

[일 시] 20 . . (요일) 00:00
[장 소]
[사 안] *2023-1*
[안 건] *○○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여부*

[사안 개요]

1. 신고인: ○○○
2. 피신고인: ○○○
3. 신고 내용

   행위 1: ~

   행위 2: ~

결정사항	특이사항
“~~” 발언에 대한 성희롱 해당	피해자 보호조치, 심리상담 지원 연계,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019]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보고

(※ 제출 예시: 학교→교육지원청 해당 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재발방지대책 보고는 생략할 수 없으나,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담당자(직급)	000 (부장)		
연락처	000-000-0000		
보고일시	년 월 일		
수사기관 신고일시 (학생피해일 경우)	117	SPO	112
	*해당 수사기관 동그라미		
	년 월 일		

□ 사건 개요 및 사안 처리 결과

발생일	*년 월 일*		**사건접수일** **(인지 시점)**	*년 월 일*	**사건** **유형**	*1:1/多:1/1:多/* *불특정 다수*
기관명	*000학교(00교육지원청)*			**기관유형**	*초·중·고·특·각(공·사립)*	
피해자	직	*학생*		**성명**	000	성별 *남*
가해자	직	*교사*		**성명**	000	*여*
특이 **사항**	상급자에 의한 사안 여부				*O*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 여부				*x*	
사건 **개요**	누가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언제					
	어디서					
	무엇을					

<table>
<tr><td rowspan="2"></td><td>어떻게</td><td colspan="2"></td></tr>
<tr><td>왜</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10">조치 사항</td><td>상담/신고</td><td colspan="2">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여부, 사건처리 과정 및 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여부, 상담 횟수·일시, 신고접수 일시 등</td></tr>
<tr><td>조사</td><td colspan="2">피해자의 조사신청 여부·일시, 조사 소요시간, 조사위원회 구성 현황 및 외부위원 포함 여부, 피해자에게 조사 진행상황 고지 여부, 조사 종료 후 기관장 보고 여부 등</td></tr>
<tr><td rowspan="3">심의결과

심의결과</td><td>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 위원회</td><td>고충심의위원회 생략 여부 및 생략 시 그 사유,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여부, 위원 기피·회피 여부, 의사, 의결정족수, 고충심의위 심의 내용, 당자에게 심의결과 통지 여부 등</td></tr>
<tr><td>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td><td>심의위원회 미개최 시 예) 미개최 동의서 받고 종료</td></tr>
<tr><td>교권보호 위원회</td><td></td></tr>
<tr><td>피가해 분리 조치</td><td colspan="2"></td></tr>
<tr><td>가해자 조치</td><td colspan="2">가해자에 대한 교육 여부, 징계 시 징계 수준, 부서 전환 또는 대기발령 등</td></tr>
<tr><td>피해자 조치</td><td colspan="2">피해자 보호,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 기술, 추가피해 발생 시 내용 서술</td></tr>
<tr><td>2차피해 방지</td><td colspan="2"></td></tr>
<tr><td>기타</td><td colspan="2">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 여부 등</td></tr>
</table>

※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 처리 가능

□ 외부 기관(검·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조사 현황

○ 피해자의 외부 기관 조사 요청 여부, 외부 기관의 조사 여부 및 조사 결과

□ 기관 내 주요 성희롱 방지조치(성폭력 예방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 현황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추진계획

- 지침 및 계획서, 또는 관련 내부 규정 첨부 (예방지침 별첨, (연간추진계획)계획서 및 관련 결재문서 별첨)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 또는 개정된 사항이 있을 시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명시, 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및 여성위원 비율 고려, 사건 은폐·묵살 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에 대하여 부실하게 대응한 관리자에 대한 조치사항, 추가피해 유발한 자에 대한 조치사항,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
  (지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참조)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20○○년)

- 교육일시, 교육방법 등
- 참석자 수, 참여율(기관장 및 고위직 참여율, 비정규직 참여율) 등
- 예방교육 방식

  (교육 실시에 관한 내부 결재문서, 결과보고서(문서) 별첨)
  (시청각 교육, 외부 강사·전문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등 방식 구분하여 서술)
  (*전문강사 : 한국양성평등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 과정을 이수한 자)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방안 작성

  (교육 참여율 제고 방안, 기관장 및 고위직 참여율 제고 방안, 비정규직 등의 참여율 제고 방안, 교육방법 개선 등 작성)

○ 고충상담원 지정 및 전문교육 이수(20○○년)

- 고충상담원 지정(남 ○명, 여 ○명)

구분	성별	직위·직급	비고
고충상담원 A			•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 : (O, X) '○○년 (행정직, 관련 분야 전문가, 직장협의회 대표 등 참고사항 서술)
고충상담원 B			
고충상담원 C			

(연간추진계획에 당해 연도 고충상담원 지정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중에 지정사항 변동 시 관련 결재 필요)

○ 고충상담창구 설치현황(사이버신고센터 운영 현황도 포함하여 기술)

- (○○○○과(부서명)에 설치, 고충상담창구 표지판·명패 등 게시 여부 서술 등)

○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구분	성별	내·외	비고
위원장	남	내부	(직위·직급, 기타 참고사항 서술)
고충심의위원 A	남	내부	(직위·직급, 부서, 행정직(일반직), 관련분야 전문성, 직장협의회 간부 등 참고사항 서술)
고충심의위원 B	여	외부	(○○인권센터 대표. 관련분야 전문성 등 기타 참고사항)
고충심의위원 C			
.....			

(연간추진계획에 당해연도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중에 구성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 관련 결재 필요)

○ 그 밖의 노력 사항

(고충상담창구 개선, 고충상담원 지정 개선 및 전문교육 지원,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개선 등)

□ 성희롱 방지조치(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방안 총괄표

항목	실적(최근 1년 기준)	향후 개선계획 (일정 등 구체적으로 작성)
예방지침 제정	(현재 기준 제정되어있을 시 제정 일자 기술) '○○년 ○월	미제정 시 제정계획 및 일정 작성 개정 시 개정 내용 작성
연간기본계획수립	(수립 여부 및 일자 기술)	개선계획 일정 등
교육실시/횟수	○회	목표 및 개선방안
직원 참여율	○○% (○○명 / ○○명)	목표 및 개선방안
기관장 참여	교육 ○회 중 ○회 참여	목표 및 개선방안
고위직 참여율(%)		목표 및 개선방안
비정규직 참여율(%)		목표 및 개선방안
교육방법		시청각 교육, 집합교육, 전문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등 교육방식 개선 검토
고충상담원 지정	(남○, 여○)	미지정 시 지정계획 및 일정 작성 지정 개선 시 내용 작성
고충상담원 교육이수	개인별 교육이수 실적	미이수 시 교육이수 계획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설치(구성) 현황 - 총 명(남○, 여○) * 외부 명, 내부 명	미설치(구성 개선) 시 내용, 일정 등

집필(가나다순)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김진기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변국희	화진초등학교 교감
변성숙	경기도교육청 변호사
이은심	서울특별시교육청 변호사
이하나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장학사
정진희	(전) 인천경찰청 성평등정책 담당 행정관
최희영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부대표
자문(가나다순)	
강지명	경상남도교육청 사무관
박금창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신현덕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무관
오승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원정은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이준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이채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장소영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전민경	부산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주신영	경기도교육청 주무관
차진이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총괄	
장인자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전건우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사무관
이준세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주무관
최정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3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

발 행 일 | 2023. 7. 1.

발 행 처 | 교육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 쇄 처 | (주)현대아트컴 T. 02-2278-4482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교육청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부산광역시교육청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대전광역시교육청 DAEJE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울산광역시교육청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SEJONG CITY OFFICE OF EDUCATION
경기도교육청 Ky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강원도교육청 Gangwon-do Office of Education
충청북도교육청 Chungchongbuk-do Office of Education
충청남도교육청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전라북도교육청 Chonlabukdo Office of Education
전라남도교육청 Jeollanamdo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